

연구보고 2016-03

# 어린이집 설치 기준 개선을 위한 실태 조사

김은설 박진아 김승진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머 리 말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제가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의 보육서비스 수준이 꾸준히 좋아지고 있음에는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이는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 비단 평가인증제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의 환경과 프로그램 질 개선을 위해 그간 정부와 관련 기관이 기울인 많은 노력들이 그 성과를 보여 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환경 개선의 측면에서 영유아들의 발달과 성장에 적절한 보육적 자극을 제공함과 더불어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시설 기준 수립 등 제도적 장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 정부는 애써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아교육·보육의 통합을 앞두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시설 기준 차이를 줄일 수 있게 하려는 시도는 보육 환경의 측면에서 또 한 단계 나아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본 '어린이집 설치 기준 개선을 위한 실태 조사' 연구는 유보 통합을 전망하는 과정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의 기준을 동일하게 맞추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도된 작업이다. 유보통합을 주도해온 국무조정실은 가능한 한 모든 어린이집이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실외놀이터를 구비하고 교사실을 마련하며 화재감지기를 설치해야 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유치원 또한 안전·소방시설을 확충하고 조리실을 필수실로 추가 설치하며 피난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확대하는 등 어린이집의 안전기준에 준하는 개선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어린이집 정책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는 위의 사안들이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실태를 확인하고 개선을 위한 향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이에 육아정책연구소는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관련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의 의견 수렴과 함께 개선에 필요한 비용, 기간, 조건 등을 본 수시연구 보고서를 통해 제안하였다. 아무쪼록 정부의 어린이집 시설 기준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과정에서 본 연구의 실태조사 결과물이 타당한 정책 근거 자료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6년 8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우남희**



# 차 례

요 약 .....	1
I. 서 론 .....	9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9
2. 연구 내용 .....	10
3. 연구 방법 .....	11
4. 연구 범위 .....	13
II. 어린이집 시설 기준 현황 .....	14
1. 현행 어린이집 설치 인가 기준 .....	14
2. 어린이집 시설·설비 설치 현황 .....	23
III. 시설 기준 개선을 위한 실태 조사 결과 .....	37
1. 조사의 개요 .....	37
2. 설치 실태 .....	39
3. 향후 설치에 대한 의견 .....	47
IV. 시설기준 개선을 위한 제언 .....	58
1. 설치 공간 .....	58
2. 비용 .....	61
3. 설치 의무 유예 기간 .....	63
4. 예상 설치 대상 어린이집 수 .....	64
5. 고려 사항 .....	65
참고문헌 .....	68
부 록 .....	69
부록 1. 어린이집 설치 기준 개선을 위한 실태 조사지 .....	71
부록 2. 어린이집 입지 및 건물 기준 관련 법 조항 .....	76
부록 3. 실외놀이터 설치 견적서 및 도안 .....	79

## 표 차례

〈표 I-3- 1〉 시·도별 조사 참여 어린이집 분포 .....	12
〈표 II-1- 1〉 놀이터 면적 기준 .....	16
〈표 II-1- 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나타난 어린이집 옥내놀이터 설치 규정 ..	16
〈표 II-1- 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의한 어린이집 출구 및 피난시설 관련 규정 .....	18
〈표 II-1- 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어린이집 안전 관리 규정 .....	19
〈표 II-2- 1〉 어린이집 설립유형 .....	24
〈표 II-2- 2〉 어린이집 인가년도 .....	24
〈표 II-2- 3〉 어린이집 아동현황 .....	25
〈표 II-2- 4〉 보육교직원 현황 .....	26
〈표 II-2- 5〉 어린이집 반 운영 비율 .....	27
〈표 II-2- 6〉 어린이집당 평균 운영 반 수 .....	27
〈표 II-2- 7〉 어린이집당 평균 아동 수 .....	28
〈표 II-2- 8〉 건물 유형 .....	29
〈표 II-2- 9〉 어린이집 건물 형태 .....	30
〈표 II-2-10〉 어린이집 사용 층 현황 .....	31
〈표 II-2-11〉 어린이집당 평균 보육실 수 및 시설 보유 유무 .....	32
〈표 II-2-12〉 어린이집 면적 .....	33
〈표 II-2-13〉 비상재해대비시설 기준 준수 여부 .....	34
〈표 II-2-14〉 비상재해대비시설 보유 현황 .....	35
〈표 II-2-15〉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및 확보 여부 .....	35
〈표 III-1- 1〉 조사 참여 시설(표본)의 모수 대비 비율 .....	38
〈표 III-1- 2〉 조사 참여시설의 특성 .....	39
〈표 III-2- 1〉 교사실 구비 실태 .....	40
〈표 III-2- 2〉 교사실 공간 형태 .....	41
〈표 III-2- 3〉 교사실 면적 .....	42
〈표 III-2- 4〉 단독경보형감지기 장착 여부 .....	43

〈표 III-2- 5〉 실외놀이터 설치 여부(21인 이상 49인 이하 시설의 경우) .....	44
〈표 III-2- 6〉 실외놀이터 설치비용 .....	45
〈표 III-2- 7〉 실외놀이터 설치 기간 .....	46
〈표 III-3- 1〉 교사실 설치 공간 구비 여부 .....	47
〈표 III-3- 2〉 교사실 설치 시 예상 소요 비용 .....	48
〈표 III-3- 3〉 교사실 설치 의무화 시 예상 설치 완료 시기 .....	49
〈표 III-3- 4〉 교사실을 설치하지 않으려는 이유 .....	50
〈표 III-3- 5〉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의무화 시 예상 설치 완료 시기 .....	52
〈표 III-3- 6〉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으려는 이유 .....	53
〈표 III-3- 7〉 실외놀이터 설치 가능 공간 유무 .....	54
〈표 III-3- 8〉 실외놀이터 설치 가능 공간 .....	54
〈표 III-3- 9〉 실외놀이터 설치 시 예상 소요 비용 .....	55
〈표 III-3-10〉 실외놀이터 설치 의무화 시 예상 설치 완료 시기 .....	56
〈표 III-3-11〉 실외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으려는 이유 .....	57
〈표 IV-1- 1〉 21인 이상 49인 이하 시설 실외놀이터 면적 기준 안 .....	61
〈표 IV-4 1〉 어린이집 시설 기준 개선을 위한 제안 .....	65

## 부록 표 차례

〈부록 표 II-1-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나타난 어린이집 설치 시 위험 시설 .....	77
〈부록 표 II-1-2〉 어린이집 건물 내부의 마감재료 관련 법률 내용 .....	78

## 요 약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정부는 유·보통합을 구체화하는 물리적 환경 기준의 통합이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시설 기준 차이를 확인하고 이를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조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 함.
- 본 연구는 유·보통합을 준비하는 맥락에서 설치 기준 개선이 필요한 부분, 특히 실외놀이터의 설치, 필수실로서 교사실의 설치, 그리고 필수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안전대피를 위한 경보설비(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기준 등 세 가지 항목에 대해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결과를 검토하고 개선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음.

### 2. 연구 내용

- 어린이집 실외놀이터, 교사실,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관련 법 규정을 검토하고자 함. 즉, 어린이집 옥외놀이터, 옥상놀이터 설치와 관련된 규정, 소방관련 안전법 등 단독경보형감지기 관련 법 규정을 검토하고자 함.
- 21인 이상 49인 이하 어린이집의 실외놀이터 설치 실태 및 확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21인 이상 어린이집의 교사실 설치 실태 파악 및 신규 설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더불어 교사실의 적정 면적을 검토하고 설치 시 예상 비용을 산출하여 이후 필요한 정부 지원 가능 수준에 대해 논의 자료를 제공함.
-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실태 및 설치 확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화재 방재용인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실태를 파악하고 설치 시 필요비용과 설치 의무화 규정 도입 시 필요 유예 기간 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함.

### 3. 연구 방법

- 어린이집 설치 기준과 관련된 법, 규정 등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기존 문헌을 검토하여 현행 제도의 문제점, 개선 방향 등에 대해 탐색함.
- 어린이집의 시설 설비 등 물리적 환경과 관련된 자료를 보건복지정보시스템(DW)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어린이집의 놀이터, 교사실, 긴급대피대비 시설 현황 등을 파악함.
- 어린이집 대상 실태 조사를 실시함. 조사는 크게 세 가지의 영역임.
  - 가정어린이집을 제외한 전국 21인 이상 49인 이하 어린이집에 대해 실외 놀이터 구비 현황, 비구비시 설치 가능 여부, 예상비용 가용 여부 등 조사
  - 전국 어린이집에 대해 교사실 설치 현황 및 미설치시 설치 가능성 조사
  -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 및 향후 설치 가능성에 대한 의견 조사
- 조사방법은 웹페이지에 설문을 구축하여 어린이집 원장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오픈형 온라인 조사로 진행함. 전체 어린이집 모수의 약 5%에 해당하는 2,000개소가 참여할 것을 예상하였으나 최종 1,950개소가 참여함.
- 어린이집 놀이터 설치 전문 업체, 화재경보기 등 관련 업체 담당자를 면접하여 설치 현실적인 설치 가능성, 설치비용, 기간 등에 대해 조사함.
-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교사실 설치, 실외놀이터 설치, 화재감지기(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와 관련하여 의견을 수렴함.
- 연구 내용 및 정책 제언 관련 협의를 위해 보건복지부 등 담당자와의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개최함.

### 4. 어린이집 시설 기준 현황

- 어린이집 설치 및 시설·설비와 관련된 법은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건축법 시행령」 등이 있음. 기본적으로 어린이집 설치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며, 제15조(어린이집 설치 기준)에는 어린이집을 설치 및 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기준을 갖추어야 함이 명시되어 있음.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는 어린이집 부지는 보육수요, 보건, 위생, 급수, 안전, 교통, 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갖춘 부지를 선정해야 함을 명시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어린이집이 위험시설(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공장,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등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도록 규정함.
-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2(놀이터 설치)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예외적으로 보육 정원이 50명 미만인 경우, 100미터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됨.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는 보육 정원 50명 이상 어린이집(12개월 미만의 영아만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제외)은 영유아 1명당 3.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옥외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어린이집은 소화용 기구를 갖춰 두고 비상구를 설치하는 등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함. 건물전체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어린이집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노유자시설에 포함되므로 동 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에 속하여 규정대로 소방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음.
- 어린이집 설치 시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본시설은 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옥외놀이터(정원 50인 이상 시설), 급배수 시설, 비상재해 대비시설(어린이집이 2층 이상인 경우)임. 교사실은 제외되어 있음.

## 5. 어린이집 시설·설비 설치 현황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어린이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반수를 살펴본 결과, 평균 운영 반수는 7.52개임.
-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는 건물 유형을 살펴본 결과 전체 어린이집의 68.8%는 보육시설 전용건물인 것으로 나타났고, 공동주택관리동 7.5% 단독주택 5.5%, 상가 5.2% 순으로 나타남.
- 어린이집의 평균 보육실 수와 놀이터, 사무실 등의 시설보유 유무를 살펴보

면, 전체 어린이집의 평균 보육실은 4.5개인 것으로 나타남. 어린이집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을 살펴보면, 보건/위생실과 조리실/급식실은 각각 94.6%, 87.4%로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놀이터 시설의 경우, 실외놀이터 21.6%, 인근놀이터 11.3%, 실내놀이터 8.8%, 옥상놀이터 3.9% 순으로 나타남. 전체 어린이집의 46.3%는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음.

- 건물 층별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기준 준수 여부를 살펴보면 전체 어린이집의 95.9%가 비상재해대비시설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4.0%는 미설치한 것으로 나타남.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전체 어린이집의 14.3%는 비상계단을 설치하였고, 6.9%가 미끄럼대, 4.1%가 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전국보육실태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어린이집의 91.1%는 양방향 대피 비상구와 출구를 설치하였고, 자동화재탐지설비 39.7%, 비상계단 37.0%, 스프링클러 33.0%의 어린이집이 설치한 것으로 조사됨.

## 6. 시설 기준 개선을 위한 실태 조사 결과

### 1) 조사의 개요

- 본 조사는 어린이집 설치 기준 개선을 위한 실태 파악과 기준 변경 이후 적용의 효율성을 예상하기 위한 자료의 취합에 기본적인 목적이 있음. 구체적으로 규모가 21인 이상인 모든 어린이집은 실외놀이터를 설치하도록 기준을 개선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현황과 의견을 알아보하고자 함. 또한 필수실로서 교사실의 설치나 화재경보기의 일종인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기준 도입과 관련해서도 현황과 가능성을 함께 살펴보는 데에도 목적을 둠.
- 조사는 2016년 7월 5일부터 2주간 실시되었음. 조사를 위한 웹페이지에 설문 문항을 탑재하고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에 공지하여 자발적으로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웹상에서 응답을 하고 응답 자료가 전산에 의해 자동으로 코딩 처리될 수 있도록 하였음.
- 실태 조사에 참여한 어린이집은 총 1,950개소임. 국공립 시설이 250개소로

12.8%, 민간 시설이 727개소로 37.3%, 사회복지법인이 84개소(4.3%) 등이고 가장 어린이집이 731개소(37.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그 외에도 법인단체, 직장, 부모협동어린이집이 각각 58개소, 91개소, 9개소 등이 참여하였음.

## 2) 설치 실태

- 조사 결과상 어린이집에 교사실이 설치되어 있는 비율을 살펴보면, 교사실이 있다는 어린이집이 52.2%임. 설립유형별로는 직장어린이집이 85.7%의 가장 높은 비율로 교사실이 있다고 응답함. 교사실의 평균 면적은 19.5㎡임.
- 비상재해대비시설로서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두고 있는 어린이집 비율을 살펴보면 응답 시설의 71.2%가 설치를 이미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8.8%가 아직 설치하지 않았다고 응답함. 시설 설립유형별로는 직장어린이집과 부모협동, 국공립어린이집의 순서로 설치비율이 높았고 특히 직장어린이집의 경우는 87.9%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실외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비율을 살펴보면 자체 놀이터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1.5%이고 인근의 공원 등 공공 실외놀이터를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61.0%를 차지함. 실외놀이터가 전혀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17.5%였음.
- 실외놀이터를 설치하고 있는 어린이집에게 설치 시 놀이기구, 바닥재 등 투입되는 모든 기자재를 포함하여 어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었는지 질문함. 평균적으로 약 1,721만원의 비용이 든 것으로 나타남. 실외놀이터 설치 공사를 완료하는 데 걸린 기간은 평균 18일 정도인 것으로 조사됨.

## 3) 향후 설치에 대한 의견

- 현재 교사실을 설치하고 있지 않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교사실을 설치해야 한다면 설치할 만한 공간이 있는지를 질문함. 이에 대해 10.3%가 공간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89.7%는 교사실을 설치할 공간이 없다고 응답함.
- 실내 집기를 포함하고 시설 재정비를 통해 교사실을 설치할 경우 얼마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평균 10,864천원을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교사실 설치를 연내에 시행한다고 가정할 때 교사실 설치를 언제까지 완료할 수 있다고 보는지 질문한 결과, 원장들의 33.9%가 결코 교사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답함. 조사 시점부터 1년 정도인 2017년 상반기 이내에 설치하겠다는 비율이 22.8%였고 2017년 하반기까지는 총 38.9%가 설치 의지를 보임.

- 단독경보형감지기를 현재 설치하고 있지 않은 시설을 대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다면 언제까지 설치 완료가 가능한지 질문한 결과, 36.2%가 올해(2016년) 이내로 완료가 가능하다고 응답하였고 2017년 상반기까지를 범위로 살펴보면 과반수가 넘는 55.8%가 설치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음.
- 현재 실외놀이터를 이용하고 있지 않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외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의 73.5%가 설치 공간이 없다는 응답을 함.
- 실외놀이터를 설치할 공간이 있다고 응답한 21인 이상 49인 이하 시설에서는 향후 실외놀이터를 설치하고자 할 때 평균 5,563만원 정도를 설치 예상비용으로 보고 있어 실제 설치비용으로 조사된 1,721.4만원보다 3배 가까이 높은 비용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실외놀이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설치를 완료할 수 있는 시기를 언제로 보는가라는 질문에서, 69.9%의 많은 수가 설치하지 않겠다고 응답함. 하반기 이전에 실외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4.3%정도였음.

## 7. 시설기준 개선을 위한 제언

### 1) 공간

- 의무화되더라도 교사실을 설치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34%로 나타나고 있어 교사실 설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간이 부족하더라도 설치해야할 상황이라면 66%는 시설에 교사실을 두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는 점에 주의를 두어야 할 것임.
- 50인 이상 시설에서는 평균 10.3개의 반이 있어 최소한 10명 이상의 교사가 근무하고 있다고 볼 때 이들을 위한 사무 및 휴식 공간인 교사실은 필요해 보이고 설치 가능할 것으로 짐작됨. 그러나 20인 이하 시설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여겨짐. 어린이집 전체 교사실의 평균 넓

이가 19.5㎡이고 50인 이상 어린이집의 경우가 21.9㎡임을 감안하면, 교사실 면적 기준을 20㎡내외로 삼을 만함.

- 화재대비시설로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고 있는 비율을 보면 71.2%가 설치를 하고 있고 설치하지 않은 시설에서도 근년 내로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 비율이 85%를 넘어,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큰 어려움 없이 수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임.
- 21인 이상 49인 이하 시설에서 현재 개별 어린이집 소유 실외놀이터가 없는 시설의 경우 26.5%만이 마당이나 옥상 등에 설치할 공간이 있다고 응답하여 실제로 신규로 놀이터 설치가 가능한 경우가 많지 않음을 짐작하게 함.
- 「보육사업안내」에서 제시하고 있는 놀이터 면적 기준은 50인 이상 99인 이하 시설의 경우 “정원×45%×3.5m” 산식을 이용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21인 이상 49인 이하 시설 실외놀이터 면적은 33.1㎡~77.2㎡임.

## 2) 비용

- 교사실의 설치비용은 획일적으로 제시하기가 어려움. 조사의 결과를 보면, 원장들이 소요 비용으로 예상하고 있는 평균 금액은 1,086만원 정도이고 규모가 클수록 더 큰 비용을 예상하여 50인 이상일 때 5,000만원 이상이 들 것으로 보는 비율도 꽤 있음.
-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가격은 인터넷 온라인 판매를 검색해본 결과 대당 10,000원 내외부터 30,000원 정도까지인 것으로 조사됨. 어린이집의 규모에 따라 최소 50,000원 정도부터 200,000원 이상까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실외놀이터 설치 예상 비용은 두 가지 방식으로 추정해 봄. 첫째는 기존 실외놀이터 설치 시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소요 비용 평균은 1,721만원임. 두 번째의 방법은 어린이집 실외놀이터 전문 시공 업체와의 면담을 통해 33.1㎡~77.2㎡인 경우(「보육사업안내」에서 제시하고 있는 놀이터 면적 기준에 따른 21인 이상 49인 이하 시설 실외놀이터 면적)의 비용을 조사함. 33.1㎡일 경우에 최소 600만원, 77.2㎡일 경우는 최소 900만원부터 1,370만원까지로 산출됨.

### 3) 설치 의무 유예 기간

- 어린이집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 설치 의사가 있는 응답자의 59%가량이 1년간의 유예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음. 조사 결과상 100% 전체 설치하는 2년이 지난 2018년 하반기에 가능할 것으로 여겨짐. 이러한 응답 경향을 고려하여 최소 1년 이상 2년 이내의 의무 설치 유예 기간이 필요해 보임.
-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와 관련해서 어린이집의 64.4%가 내년(2017년) 상반기까지 설치할 수 있다는 응답을 보이고 총 81.1%는 내년 하반기까지 설치하겠다는 의사를 보임. 이에 근거하여 최소 6개월간의 설치 유도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실외놀이터 설치에 대해서는 많은 수가 설치하지 않겠다라는 응답(46.3%)을 보인 가운데 제시된 설치 가능 시기에 대해 55%가 설치 의무화 시행 2년 후로 가정된 2018년 하반기 이후를 선택함. 유예기간은 최소 2년으로 보임.

## 8. 고려 사항

- 교사실의 필수실 지정은 신축, 이전을 위한 변경인가의 경우 등에 적용하여 개선하는 방향이 필요하며, 현실적 공간 상황이나 교사 수 등을 고려할 때 21인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 필수로 정하는 것이 타당함.
- 어린이집 평가인증 3차 지표에 의하면 보육실 면적이 인당 2.64㎡로 규정되어 있는데 인가된 전체 면적과 정원을 고려하면서 보육실 면적 규정을 지키고자 한다면 다양한 실(공간)을 구성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교사실 설치하는 신규 인가 시설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도입하거나 도심지역 등을 제외하는 등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실행 지침이 필요함.

# I. 서론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정부는 2014년부터 국무조정실 소속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을 설치하고 2016년 완료를 목표로 유아교육과 보육 간 통합을 추구해왔다. 통합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국무조정실과 여러 전문가, 국책연구기관 등은 교육·보육과정, 교사 양성과 자격,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평가, 재무회계, 운영시간 및 이용연령 등 다양한 측면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차이를 줄이고 통합된 방식이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특히 물리적 환경 기준의 통합이라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시설 기준 차이를 확인하고 이를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 하였다.

시설 기준 통합과 관련하여 우선 놀이터 설치 기준을 보면, 유치원은 학교법에 따라 모든 기관이 놀이터(체육장)를 구비해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5조) 어린이집은 원칙적으로는 놀이터 구비가 필요하더라도 보육 정원이 50명 미만인 경우, 100미터 이내에 이용 가능한 놀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전용 놀이터를 반드시 설치하지는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어(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 2) 큰 차이를 보인다. 또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필수실 요건과 관련해서, 유치원은 교실, 화장실, 교사실로 제시되고 있는 반면 어린이집은 보육실, 화장실, 조리실로 보고 있어, 둘 간 환경적 간극을 줄이자면 유치원에는 조리실이, 어린이집에는 교사실이 필수실로 추가될 필요가 생긴다. 뿐만 아니라 면적 조건과 관련해서도 어린이집의 보육실 면적에 대해 1인당 기준이 지자체별로 규정되고 있는 데 비해 유치원에는 1인당 최소 면적 기준이 없어 이를 규정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16년 6월 현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유치원 기준 변경을 준비하고 있다(교육부 공고 제 2016-172호). 진행되고 있는 입법예고에는 유치원에 필요한 안전·소방시설 기준의 변경 사항 또한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는 어린이집의 입장에서 유·보통합을 준비하는 맥락을 고려하여 설치

기준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현황 실태를 파악하여 결과를 검토하고 개선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어린이집 설치 기준 중 특히 본 연구의 범위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사항은 유치원과 기준 요건에서 차이를 보이는 실외놀이터의 설치, 필수실로서 교사실의 설치, 그리고 유치원과 동일하게 새롭게 필수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안전대피를 위한 경보설비(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기준 등 세 가지 항목이다<sup>1)</sup>.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의 유치원의 경우 지금까지 400㎡이상 면적의 경우에만 필수 설치가 요구되었으나 이제부터는 400㎡미만 기관의 경우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조건이 강화될 예정이다(교육부 공고 제 2016-172호). 따라서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모든 시설에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조건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본 연구를 통해 가장 적절한 시행 절차를 파악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요컨대, 본 연구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설치 기준 통합을 준비하면서, 실외놀이터의 설치, 필수실로서 교사실의 설치, 그리고 단독경보형감지기 필수 설치와 관련하여 기준과 시행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어린이집의 설비 구비 실태와 개선에 대한 의견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 2.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 탐구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집 실외놀이터, 교사실,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관련 법 규정을 검토한다. 즉, 어린이집 옥외놀이터, 옥상놀이터 설치와 관련한 규정, 소방관련 안전법 등 단독경보형감지기 관련 법을 검토하고자 한다.

둘째, 21인 이상 50인 미만 어린이집의 실외놀이터 설치 실태 및 확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신설 어린이집과 기존 어린이집의 경우 각각의 공간 기준을 검토하고 특히 기존 어린이집의 경우 실외놀이터 설치를 위한 공간 확보의 가능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것이다. 또한 실외놀이터 설치비용과 적정한 비용 수준을 산출하고자 한다.

---

1) 이 세 가지 검토 항목은 보건복지부 관련 업무부서와의 연구 협의에 의해 필요에 따라 선정되었다.

셋째, 21인 이상 어린이집의 교사실 설치 실태 파악 및 신규 설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불어 교사실의 적정 면적을 검토하고 설치 시 예상 비용을 산출하여 이후 필요한 정부 지원 가능 수준에 대해 논의의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넷째,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실태 및 설치 확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화재 방재용인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설치 시 필요비용과 설치 의무화 규정 도입 시 필요 유예 기간 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 3. 연구 방법

연구 내용 수행을 위한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집 설치 기준과 관련한 법, 규정 등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기존 문헌을 검토하여 현행 제도의 문제점, 개선 방향 등에 대해 탐색해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실외놀이터 설치, 교사실 설치, 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 구비와 관련된 법, 규정 등에 대해 조사하고 시행 정도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관련 문헌, 보육실태 조사 등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본 연구에서 필요한 사전 정보,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하였다.

둘째, 어린이집의 시설 설비 등 물리적 환경과 관련된 자료를 보건복지정보시스템(DW)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어린이집의 놀이터, 교사실, 긴급대피대비 시설 현황 등을 살펴보았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협조를 통해 자료 확보가 가능하였다.

셋째, 어린이집 대상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크게 세 가지의 영역에서 질문이 구성되었다. 첫째는 가정어린이집을 제외한 전국 21인 이상 49인 이하 어린이집에 대해 실외놀이터 구비 현황, 비구비시 설치 가능 여부, 예상비용 가용 여부 등을 조사한다. 둘째는 전국의 어린이집에 대해 교사실 설치 현황 및 미설치시 설치 가능성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었고, 셋째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와 향후 설치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조사방법은 웹페이지에 설문을 구축하여 어린이집 원장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오픈형 온라인 조사로 진행하며, 전체 어린이집 모수의 약 5%에 해당하는 2,000개소가 참여할 것을 예상하였다. 웹 조사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협

조 하에 어린이집 운영 관련 포털 사이트에서 홍보를 하고 원장이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독려하였다. 한 개의 조사에 어린이집이 중복 참여하여 응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보육정보시스템에서 부여하고 있는 어린이집 고유번호를 첫 페이지에 입력하여 로그인을 하게 한 다음 설문지를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최종 1,950개의 어린이집이 참여하였고 전국 시도별 분포로 보았을 때 본 조사에 참여한 어린이집은 다음의 <표 I-3-1>과 같다.

<표 I-3-1> 시·도별 조사 참여 어린이집 분포

단위: 개소, %

소재 시·도	사례 수	비율
서울	374	19.2
부산	96	4.9
대구	89	4.6
인천	108	5.5
광주	46	2.4
대전	64	3.3
울산	44	2.3
세종	13	0.7
경기	483	24.8
강원	50	2.6
충북	85	4.4
충남	105	5.4
전북	56	2.9
전남	57	2.9
경북	118	6.1
경남	141	7.2
제주	21	1.1
계	1,950	100.0

넷째, 어린이집 놀이터 설치 전문 업체, 화재경보기 등 관련 기관 담당자를 면접하여 현실적인 설치 가능성, 설치비용, 설치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섯째,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실외놀이터 설치, 교사실 설치,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와 관련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특히 실외놀이터 추가 설치 사안이 해당되어 민감할 수 있는 21인 이상 49인 이하 민간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회의에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산하 서

올민간어린이집연합회가 추천한 6명의 어린이집 원장이 참석하였다.

다섯째, 내용 및 정책 제언 관련 협의를 위해 보건복지부 등 담당자와의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4. 연구 범위

본 연구의 실시 배경은 유·보통합을 위한 시설 기준의 개선 및 조절에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유·보통합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시설 기준 전반에 대한 검토를 다루고 있지는 않다. 시설 기준 개선의 전반적 방향성에 대한 연구는 이미 국무조정실이 주관하여 2015년에 진행한 별도 과제에서 제시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으며, 시설 기준 논의 사항 중 일부분인 실외놀이터, 교사실, 단독경보형감지기<sup>2)</sup> 3개 사안에 관련해서만 실태 조사를 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였다. 또한 이 세 가지 사안에 대한 관련 부처 요청에 따라 각각의 시행을 위한 공간 면적 기준, 설치비용, 설치 유도를 위한 법적 유예 기간 등에 특히 초점을 맞추어 조사하였고 이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

2)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연결회로 없이 단독으로 천정에 부착함으로써 화재를 감지하고 경보할 수 있는 간편한 기기이다. 이는 건물 전체 연결 회로와 감지기 및 수신기, 경종 등 일체의 설비를 포함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와는 차이가 있다(2016. 8. 서울소방학교 교육담당 전문가 인터뷰에 의함).

## II. 어린이집 시설 기준 현황

본 장에서는 현행 어린이집의 설치 인가와 관련된 시설 기준을 살펴보고, 어린이집의 물리적 환경 구비 현황을 보건복지정보자료(DW)를 활용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 1. 현행 어린이집 설치 인가 기준

어린이집 설치 및 시설·설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에는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건축법 시행령」 등이 있다. 기본적으로 어린이집 설치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며, 「영유아보육법」 제15조(어린이집 설치 기준)에는 어린이집을 설치 및 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기준을 갖추어야함이 명시되어 있다.

#### 가. 입지 및 건물 기준

어린이집 입지 및 건물 기준에 관한 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건축법 시행령」에 제시되어 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는 어린이집 부지는 보건, 위생, 보육수요, 급수, 교통, 환경, 교통편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갖춘 부지를 선정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어린이집이 위험시설(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공장,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등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어린이집이 소음으로부터 보호되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부록 2 참조).

어린이집 설치 건물과 관련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는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를 그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특성에 맞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영유아를 안전하게 교육·보육하는 일이 최우선순위인 어린이집의 특성이 반영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린이집은 하나의 건물에 설치하여야 하는데, 담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동일 대지 안에 5층 이하의 여러 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 모든 건물 전체가 어린이집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보건복지부, 2016). 하지만 보육 정원이 50명 이상인 어린이집에 옥외놀이터가 설치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어린이집의 건물 면적은 놀이터 면적을 제외하고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면적이 영유아 1명당 4.29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어린이집 건물 내부의 마감 재료에 관한 내용은 「건축법시행령」 제61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부록 2 참조)의 규정을 따른다(보건복지부, 2016).

## 나. 놀이터 기준

어린이집에서 이용하는 놀이터는 크게 옥외놀이터, 옥내놀이터, 인근놀이터로 구분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2016)의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옥외놀이터는 어린이집의 자체 부지에 부속하여 설치한 실외놀이터이며 옥내놀이터는 어린이집 건물 내부의 실내·외 공간에 설치한 놀이터이다. 옥내놀이터에는 실내놀이터(어린이집 내부의 방에 설치한 놀이터), 옥내중간놀이터(어린이집의 중간층의 실외공간을 활용한 놀이터), 옥상놀이터(어린이집의 최상층 바닥면에 설치하는 놀이터)가 포함된다(보건복지부, 2016). 인근 놀이터는 어린이집과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는 실외놀이터를 의미한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2(놀이터 설치)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예외적으로 보육 정원이 50명 미만인 경우, 100미터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정일(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인가받은 어린이집이 지역적 여건상 놀이터를 설치하기 어려우며 보육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놀이터를 설치하지 않거나 놀이터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는 12개월 미만의 영아만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제외하고 보육 정원 50명 이상인 어린이집은 영유아 1명당 3.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옥외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현재는 보육 정원이 5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옥외놀이터 설치를 의무

화하고 있다. 하지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 정원에 따라 같은 시간대에 놀이 활동에 참여하는 최대 영유아 수 및 면적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 놀이터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 또한 명시되어 있다. 놀이터의 면적 기준은 <표 II-1-3>와 같으며, 고정식 놀이기구가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는 「어린이놀이 시설 안전관리법」의 설치검사로 인정받은 면적을 인정한다(보건복지부, 2016).

<표 II-1-1> 놀이터 면적 기준

정 원	면적 산정 기준	비 고
50인~99인	정원×45%×3.5㎡	각 정원의 45%를 기준으로 1인당 3.5㎡ 이상으로 놀이터를 설치함
100인~129인	100명×45%×3.5㎡	45명 기준
130인~159인	130명×40%×3.5㎡	52명 기준
160인~199인	160명×40%×3.5㎡	64명 기준
200인~249인	200명×35%×3.5㎡	70명 기준
250인~300인	250명×35%×3.5㎡	87명 기준

주: 1) 12개월 미만의 영아만을 보육하는 시설은 제외함.

2) 12개월 미만의 영아는 면적산정 시 제외함.

자료: 보건복지부(2016). 보육사업안내. p40에서 발췌함.

옥외놀이터에는 모래밭에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대근육활동을 위한 놀이기구 1종 이상을 포함하여 놀이기구 3종 이상이 설치되어야 한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하지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및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옥외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옥내놀이터를 설치하거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관리되는 인근의 놀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옥내놀이터와 관련해 <표 II-1-2>와 같은 규정이 있다.

<표 II-1-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나타난 어린이집 옥내놀이터 설치 규정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 옥내놀이터는 놀이터로 사용하는 공간 및 그 주변에 소음·분진·폭발·화재의 위험이 없어야 하며, 실내공간을 활용하는 경우 조명·채광·환기·온도·습도가 적정하여야 한다.</li> <li>(ii) 어린이집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옥내놀이터는 보육실로부터 5층 이내에 설치하며, 층 간 이동을 위하여 아동용 손잡이 레일을 설치하는 등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아동용 손잡이 레일은 영유아가 잡거나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여야 하며, 영유아의 신체가 빠지거나 끼</li> </ul> |
|--|

- 는 사고가 없도록 설치한다.
- (iii) 옥내놀이터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건물 내의 실외공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울타리나 보호난간을 최소 1.5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되 놀이기구의 높이 등에 맞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높이로 설치하여야 하고, 그 밖에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울타리나 보호난간의 재질은 부식·파손의 위험이 없어야 하며, 영유아가 잡거나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되, 난간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경우 그 안치수는 80밀리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iv) 옥내놀이터를 어린이집의 최상층 바닥면에 설치하는 경우, 울타리나 보호난간은 바닥면 최하단으로부터 1.2미터까지는 콘크리트·조적(벽돌 등) 또는 강화유리 등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고정식 놀이기구는 해당 층 바닥이 설치하고자 하는 놀이시설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건축되어 있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 (v) 건물 2층 이상에 옥내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하는 비상재해 대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main.html>). 인출일 2016. 7. 5.

또한 어린이집의 놀이터, 놀이기구 및 어린이용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환경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밖에 놀이터 설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 다. 안전 및 방재 관련 기준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를 보육하는 만큼 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하여 안전 및 방재 관련 기준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안전 및 방재와 관련된 규정은 어린이집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건축물에 적용되기 때문에 「영유아보육법」 외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또한 살펴보아야한다. 우선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3(비상재해대비시설)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반드시 1층과 2층 이상 등 종류별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을 살펴보면, 어린이집은 소화용 기구를 갖추어 두고 비상구를 설치하는 등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비상구는 상단에 비상구 유도등을 달고 잠금장치를 문 안쪽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비상시 양 방향으로 피난할 수 있어야 하고 각 층별 출구 및 피난시설 등은

어린이집이 위치한 층수에 따라 다르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표 II-1-3 참조).

〈표 II-1-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의한 어린이집 출구 및 피난시설 관련 규정

- |   |
|---|
| <p>(i) 어린이집이 건물 1층인 경우: 주 출입구 외에 도로 등 안전한 외부 지상과 연결이 가능한 1개 이상의 출구[비상구 또는 유사시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창 또는 개구부(開口部)]를 어린이집 주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거나 장변길이의 2분의 1 이상을 이격하여 설치할 것. 이 경우 출구의 규격은 유효 폭 0.75미터 이상 유효높이 1.75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출구의 최하단은 안전한 외부 지표면부터 1.2미터 이하여야 한다.</p> <p>(ii) 어린이집이 2층과 3층인 경우: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영유아용으로 설치하고 그 밖에 안전사고 및 비상재해에 대비한 피난시설, 장비 등을 구비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 내부에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거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를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등 관련 기준에 따라 건물 전체에 걸쳐 유효하게 설치하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피난기구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iii) 어린이집이 4층과 5층인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에 따라 건물 전체에 걸쳐 유효하게 설치하고, 건물 내에 양방향 피난이 가능한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며(2개 이상의 직통계단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직통계단 1개소는 건물외부에 비상계단을 설치하여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보육실의 주출입구는 직통계단 또는 비상계단까지의 보행거리가 30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고, 건물의 천장·바닥과 벽체 등의 내부 마감재는 불연재로 설치하며, 벽체 등에는 가연성 장식물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조리실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벽 및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방화문으로 외부와 구획하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연소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가 아니어야 하고, 2급 이상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고용(직원 중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하여 방화관리를 할 것</p> |
|---|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main.html>). 인출일 2016. 7. 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건축법」에 명시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건물

전체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어린이집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노유자시설에 포함되므로 동 법에 의한 '특정 소방대상물'에 속하여 규정대로 소방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다. 어린이집 규모 및 수용인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규정에 따르면 어린이집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 비상경보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표 II-1-4>와 같다.

<표 II-1-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어린이집 안전 관리 규정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5조 관련)
1. 소화설비 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연면적 33㎡ 이상인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연면적 3천㎡ 이상(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한다)이거나 지하층·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다) 노유자시설 마.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4) 노유자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제12조제1항제6호 각 목에 따른 시설(제12조제1항제6호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 중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노유자 생활시설"이라 한다) 나) 가)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다) 가)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사.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천㎡ 이상인 것. 이 경우 같은 구(區) 내의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연소(延燒) 우려가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 2. 경보설비

가.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 1) 연면적 400㎡(지하가 중 터널 또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축사 등 동·식물 관련시설은 제외한다) 이상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공연장의 경우 100㎡) 이상인 것

나.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1) 연면적 3천5백㎡ 이상인 것
- 2)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 3)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

다. 누전경보기는 계약전류용량(같은 건축물에 계약 종류가 다른 전기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 중 최대계약전류용량을 말한다)이 100암페어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 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것만 해당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가 중 터널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6) 노유자 생활시설

마.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2) 노유자 생활시설
- 3) 2)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1) 연면적 1천㎡ 미만의 아파트등

사. 시각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라목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2)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발전시설 및 장례식장

아.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1) 판매시설, 운수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 3. 피난설비

가. 피난기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 지상 1층, 지상 2층 및 층수가 11층 이상인 층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가 중 터널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할 대상

- 1)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및 유도표지

라.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1)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 이상인 것
-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main.html>). 인출일 2016. 7. 6.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에서는 건물에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피난안전구역) 또는 직통계단 2개소를 설치하고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도록 규정하고 있다.

## 라. 필수 실 기준

어린이집 설치 시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본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에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옥외 놀이터(정원 50인 이상 시설), 급배수 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어린이집이 2층 이상인 경우)이다. 앞에서 살펴본 옥외놀이터와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필수 실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과 보건복지부(2016)의 보육사업안내를 참고하여 아래에 정리하였다.

### 1) 보육실

보건복지부(2016)에 따르면 보육실을 영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실내공간으로 반별 정원을 고려하여 별도로 구획된 공간을 의미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는 건축법령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보육실은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8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고, 해당 층 주 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부터 1미터 이내인 층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보육실 공간은 영유아 1명당 2.64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침구, 놀이기구 및 쌓기놀이영역, 소꿉놀이영역, 미술영역, 언어영역, 수학·과학영역, 음률영역 등에 필요한 교재·교구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영유아의 안전 및 건강을 고려하여 보육실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채광과 조명, 온도와 습도가 적절히 유지되도록 하며 바닥난방시설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 2) 조리실

조리실은 위생이 가장 중요하므로 세균이 번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채광이 잘 되도록 하고,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조리실 창문에는 방충망을 갖추어야 하며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조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보건복지부(2016)의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관 안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에 있는 조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유치원과 같은 건물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유치원의 조리실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조리실에는 전담영양사 및 전담조리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밀폐 가능한 냉온조절 운반차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조리된 음식물의 오염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보건복지부, 2016).

### 3) 목욕실

목욕실은 보육실과 인접한 공간에 설치하며 건물외부에 설치하는 것을 불가하다. 안전을 위해 목욕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해야 하며 난방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되어있다. 냉·온수 공급을 위한 샤워설비와 세면설비 등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수도꼭지는 온수 사용 시 영유아에게 화상과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온도를 조정 및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 4) 화장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는 화장실에는 목욕실과 마찬가지로 보육실과 같은 층의 인접한 공간에 설치하여야하며 미끄럼 방지장치를 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세정장치와 수도꼭지 등은 냉·온수의 온도를 조정 및 고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2016)는 화장실에는 수세식 유아용 변기를 10~15인당 1개 이상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성인용 변기에 디딤판과 탈부착식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고 이동식 유아용 변기를 갖춘 경우에는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 5) 급배수 시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는 어린이집에서 상수도 또는 간이상수도에 의하여 먹는 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저수조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수도꼭지에 연결하여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직접 수도꼭지에 연결하기 곤란한 경우는 예외로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할 경우에는 저수조 등의 시설을 경유하여야 하며 더러운 물, 빗물 등이 잘 처리되도록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 마. 기타 시설

보건복지부(2016)는 보육사업안내를 통해 기본시설 외에도 어린이집의 시설규모에 따라 사무실, 양호실, 식당, 자료실, 상담실, 강당 등을 설치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어린이집 원장 사무실과 보육교직원 휴게실도 설치가 가능한데 원장 사무실은 보육실과 동일 층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건복지부(2016)의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보육교직원의 기숙시설은 농산어촌 등과 같이 교사 등 보육교직원 수급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나 보육교직원 기숙시설에 보육교직원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것은 불가하다. 그리고 어린이집의 일부를 대표자 등의 주거시설 및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불가하다(보건복지부, 2016).

## 2. 어린이집 시설·설비 설치 현황

본 절에서는 2016년 4월 기준으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집의 시설·설비 설치 현황을 알아보고자 한다.

### 가. 전국 어린이집 현황

어린이집을 설립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41,666개소 어린이집 중 가정어린이집이 51%(21,247개소)로 가장 많고, 민간어린이집 34.6%(14,431개소), 국공립 6.6%(2,731개소), 사회복지법인 3.4%(1,408개소), 직장 2.1%(880개소), 법인·단체 2.0%(813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대도시의 경우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에 비해서는 국공립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중소도시의 경우 대도시나 읍면지역에 비해 가정어린이집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서는 어린이집 정원이 20명 이하인 어린이집의 98.4%는 가정어린이집인 것으로 나타났고, 정원이 21명~49명인 어린이집의 82.7%는 민간어린이집인 것을 알 수 있다. 정원이 50명 이상인 규모의 어린이집 중에서도 민간어린이집의 비중이 61.7%로 높게 나타났으나,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율도 17.4%로 20명 이하, 20~49명 규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1〉 어린이집 설립유형

단위: %(개소)

구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계(수)
전체	(2,732) 6.6	(1,408) 3.4	(813) 2.0	(14,431) 34.6	(21,247) 51.0	(155) 0.4	(880) 2.1	(41,666) 100.0
소재지								
대도시	9.1	2.4	1.7	35.7	47.9	0.4	2.7	100.0(15,391)
중소도시	3.9	1.6	1.1	31.4	60.1	0.3	1.6	100.0(18,164)
읍면지역	7.6	9.2	4.4	39.9	36.5	0.3	2.1	100.0( 8,111)
규모								
20명이하	0.7	0.0	0.1	0.1	98.4	0.4	0.3	100.0(21,593)
21~49명	8.1	2.2	2.6	82.7	0.0	0.7	3.8	100.0( 9,679)
50명이상	17.4	11.4	5.2	61.7	0.0	0.1	4.3	100.0(10,394)

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어린이집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분석함.

2016년 4월 기준으로 전국 어린이집의 연도별 인가년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II-2-2>와 같다. 전체 41,666개소 어린이집의 60%가 2005년 이후에 설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5~2009년의 기간 동안 설립된 어린이집이 30.8%로 가장 많았으나 이후 2010~2012년 17.5%, 2013~2016년 11.7%의 추세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유형별로 살펴보면, 직장어린이집이 2013년 이후 47.2%가 설립되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부모협동이 40.7%, 국공립어린이집이 19.0%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2-2〉 어린이집 인가년도

단위: %(개소)

구분	1990년 대 이전	1990- 1994년	1995- 1999년	2000- 2004년	2005- 2009년	2010- 2012년	2013- 2016년	계(수)
전체	1.0 (416)	4.8 (1,978)	14.2 (5,913)	20.0 (8,322)	30.8 (12,840)	17.5 (7,304)	11.7 (4,893)	100.0 (41,666)
설립유형								
국공립	11.8	19.1	15.5	6.1	17.5	11.0	19.0	100.0( 2,732)
사회복지	3.6	28.4	41.3	10.9	13.7	0.8	1.2	100.0( 1,408)
법인·단체	1.7	17.8	57.7	11.4	6.8	1.6	3.0	100.0( 813)
민간	0.2	4.4	20.9	25.9	24.8	13.1	10.7	100.0(14,431)
가정	0.0	1.3	6.4	19.2	39.3	23.0	10.9	100.0(21,247)
부모협동	0.0	0.0	7.1	15.5	19.4	17.4	40.7	100.0( 155)
직장	0.0	0.5	7.5	8.6	16.8	19.4	47.2	100.0( 880)

구분	1990년 대 이전	1990- 1994년	1995- 1999년	2000- 2004년	2005- 2009년	2010- 2012년	2013- 2016년	계(수)
<b>소재지</b>								
대도시	1.8	5.7	16.8	22.2	29.0	14.8	9.7	100.0(15,391)
중소도시	0.4	3.2	11.6	19.3	33.6	19.5	12.5	100.0(18,164)
읍면지역	0.9	6.5	15.0	17.4	28.1	18.3	13.9	100.0( 8,111)
<b>규모</b>								
20명이하	0.0	1.3	6.4	19.1	38.9	22.9	11.4	100.0(21,593)
21~49명	0.3	4.6	17.6	23.4	26.5	14.3	13.4	100.0( 9,679)
50명이상	3.7	12.1	27.2	18.7	18.0	9.5	10.9	100.0(10,394)

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어린이집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분석함.

2016년 4월 기준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아동현황은 다음 <표 II-2-3>과 같다. 2016년 4월 기준으로 어린이집 현원은 1,336,267명이며 2세가 384,054명으로 가장 많고, 3세가 271,341명, 1세가 265,445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2-3> 어린이집 아동현황

구분	정원	현원	단위: 명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전체	1,774,773	1,336,267	67,528	265,445	384,054	271,341	184,156	155,511	8,232
<b>설립유형</b>									
국공립	192,279	171,912	3,873	22,169	37,191	39,591	35,472	31,950	1,666
사회복지	135,064	94,000	1,374	11,037	21,835	23,984	17,969	15,536	2,265
법인·단체	59,077	44,246	580	4,549	9,225	10,966	9,186	8,200	1,540
민간	931,854	689,668	15,856	98,881	188,760	180,837	110,888	91,884	2,562
가정	385,739	282,456	44,456	119,600	114,329	2,911	710	385	65
부모협동	4,932	3,902	70	425	906	1,000	774	706	21
직장	65,828	50,083	1,319	8,784	11,808	12,052	9,157	6,850	113
<b>소재지</b>									
대도시	662,377	518,288	25,492	104,259	152,302	106,434	67,679	57,707	4,415
중소도시	670,213	502,885	29,612	108,942	151,864	93,943	63,170	53,524	1,830
읍면지역	442,183	315,094	12,424	52,244	79,888	70,964	53,307	44,280	1,987
<b>규모</b>									
20명이하	392,215	287,625	44,924	120,932	115,718	3,444	1,087	654	866
21~49명	358,838	264,599	12,721	62,747	94,287	56,208	21,316	14,272	3,048
50명이상	1,023,720	784,043	9,883	81,766	174,049	211,689	161,753	140,585	4,318

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어린이집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분석함.

2016년 4월 기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현황은 다음 <표 II-2-4>와 같다. 전체 보육교직원은 302,223명으로 이 중 보육교사는 211,427명, 간호사가 1,187명, 영양사가 907명, 조리사가 27,690명으로 나타났다.

<표 II-2-4> 보육교직원 현황

단위: 명

구분	전체	원장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사	특수교사	치료사	기타
전체	302,223	41,466	211,427	1,187	907	27,690	2,122	587	16,837
설립유형									
국공립	31,867	2,717	22,503	191	126	3,513	948	152	1,717
사회복지	18,431	1,405	12,048	117	96	1,849	851	350	1,715
법인·단체	8,336	810	5,471	48	39	939	87	17	925
민간	136,329	14,366	97,853	676	479	13,128	228	66	9,533
가정	94,244	21,138	64,033	0	4	6,727	2	2	2,338
부모협동	922	154	601	0	0	114	1	0	52
직장	12,094	876	8,918	155	163	1,420	5	0	557
소재지									
대도시	118,135	15,316	84,278	414	349	10,297	1,035	255	6,191
중소도시	118,595	18,093	82,640	440	333	11,050	614	152	5,273
읍면지역	654,93	8,057	44,509	333	225	6,343	473	180	5,373
규모									
20명이하	95,883	21,474	64,978	0	4	6,955	28	13	2,431
21~49명	67,785	9,621	47,504	7	9	6,283	704	267	3,390
50명이상	138,555	10,371	98,945	1,180	894	14,452	1,390	307	11,016

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어린이집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분석함.

## 나. 어린이집 반 운영 현황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연령별 반 운영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 <표 II-2-5>와 같다. 2세 반을 운영하는 비율이 86.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1세 반 80.3%, 0-1세 혼합반 59.8%, 1-2세 혼합반 58.9% 순으로 나타났다. 설립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정어린이집의 0-1세, 1-2세 혼합반 운영 비율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부모협동어린이집의 경우 3-4세 혼합반의 운영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소재지에 따라서는 중소도시의 4, 5세 반 운영 비율이 대도시와 읍면지역에 비해 낮고, 0-1세 혼합반과 1-2세 혼합반 운영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2-5〉 어린이집 반 운영 비율

단위: %(개소)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혼합 0~1세	혼합 1~2세	혼합 2~3세	혼합 3~4세	전체
전체	50.9	80.3	86.6	32.6	10.3	12.0	59.8	58.9	5.0	17.8	41,666
설립유형											
국공립	28.2	83.8	94.5	72.7	30.9	39.8	10.5	12.6	0.4	18.9	2,732
사회복지	21.8	71.8	87.6	68.6	26.8	32.5	29.3	30.9	0.5	31.5	1,408
법인·단체	15.0	63.6	85.0	61.6	22.6	29.3	27.2	33.2	0.4	39.2	813
민간	34.0	75.9	94.1	57.8	17.6	19.9	44.9	52.7	5.8	37.2	14,431
가정	69.7	84.1	80.4	5.7	0.2	0.1	81.8	73.9	5.8	1.8	21,247
부모협동	14.8	40.0	73.5	50.3	16.8	22.6	23.2	45.2	7.7	51.0	155
직장	30.5	85.2	91.6	58.4	32.0	35.0	13.2	12.2	0.1	34.5	880
소재지											
대도시	51.4	82.4	88.7	34.3	10.1	12.0	57.6	56.6	5.3	18.1	15,391
중소도시	53.4	80.2	86.1	27.6	8.4	9.7	64.2	63.1	5.4	14.8	18,164
읍면지역	44.3	76.6	83.7	40.7	15.0	17.3	54.2	53.7	3.8	23.9	8,111
규모											
20명이하	69.1	83.6	80.0	5.8	0.2	0.1	81.1	73.4	5.8	2.1	21,593
21~49명	39.3	77.1	90.6	36.8	2.5	2.0	48.4	54.1	7.3	39.6	9,679
50명이상	23.8	76.4	96.6	84.5	38.6	46.1	26.3	33.3	1.3	30.0	10,394

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어린이집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분석함.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어린이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반수를 살펴본 결과, 평균 운영 반수는 7.52개였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직장어린이집이 9.48개로 반을 가장 많이 운영하였고, 사회복지어린이집 9.11개, 민간어린이집 8.87개, 국공립어린이집 7.55개 순으로 나타났다. 소재지에 따라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대략 7~8개의 반을 운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2-6〉 어린이집당 평균 운영 반 수

단위: 개

구분	전체 평균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혼합 0~1세	혼합 1~2세	혼합 2~3세	혼합 3~4세
전체	7.52	1.7	2.0	2.0	1.6	1.4	1.3	1.7	1.5	1.1	1.2
설립유형											
국공립	7.55	1.8	2.0	2.1	1.3	1.2	1.2	1.3	1.3	1.0	1.1
사회복지	9.11	1.6	2.3	2.8	1.7	1.3	1.3	1.4	1.3	1.1	1.2
법인·단체	6.72	1.4	1.8	2.1	1.5	1.3	1.3	1.3	1.3	1.0	1.1
민간	8.87	1.7	2.2	2.6	1.7	1.4	1.4	1.6	1.6	1.1	1.2
가정	6.46	1.7	1.8	1.3	1.0	1.0	1.0	1.8	1.5	1.1	1.1
부모협동	5.23	1.5	1.8	1.6	1.1	1.1	1.1	1.4	1.3	1.1	1.3
직장	9.48	2.1	3.0	2.8	1.9	1.7	1.7	1.6	1.4	1.0	1.8

구분	전체 평균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혼합 0~1세	혼합 1~2세	혼합 2~3세	혼합 3~4세
소재지											
대도시	7.78	1.7	2.1	2.1	1.5	1.3	1.3	1.7	1.6	1.1	1.3
중소도시	7.28	1.7	1.9	1.8	1.5	1.4	1.4	1.7	1.6	1.1	1.2
읍면지역	7.55	1.7	1.9	2.1	1.6	1.4	1.3	1.6	1.5	1.1	1.2
규모											
20명이하	6.42	1.7	1.8	1.3	1.0	1.0	1.0	1.8	1.5	1.1	1.1
21~49명	6.96	1.7	2.0	2.0	1.1	1.1	1.1	1.6	1.5	1.1	1.2
50명이상	10.31	1.8	2.4	3.1	1.8	1.4	1.4	1.6	1.6	1.1	1.3

- 주: 1)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어린이집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분석함.  
 2) 연령별 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기준 평균 반 현황임. 해당 연령반이 없는 시설은 제외함.

2016년 4월 어린이집의 평균 아동 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II-2-7>과 같다. 어린이집의 평균 정원은 42.6명, 현원은 32.1명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평균적으로 0세 2.8명, 1세 7명, 2세 9.9명, 3세 15.8명, 4세 13.7명, 5세 13.5명으로 나타났다.

<표 II-2-7> 어린이집당 평균 아동 수

	정원	현원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전체	42.6	32.1	2.8	7.0	9.9	15.8	13.7	13.5
설립유형								
국공립	70.4	62.9	4.4	9.0	13.9	16.8	17.0	16.8
사회복지	95.9	66.8	2.8	9.0	16.0	18.7	15.6	14.4
법인·단체	72.7	54.4	2.5	6.8	12.3	15.0	13.3	12.6
민간	64.6	47.8	2.7	8.0	13.7	16.2	13.1	12.8
가정	18.2	13.3	2.7	5.9	6.0	3.6	3.0	2.9
부모협동	31.8	25.2	2.7	5.0	6.5	7.7	6.3	6.2
직장	74.8	56.9	4.3	10.9	14.1	15.5	13.5	14.3
소재지								
대도시	43.0	33.7	2.8	7.4	10.5	15.8	13.3	13.2
중소도시	36.9	27.7	2.7	6.6	9.0	15.4	13.7	13.8
읍면지역	54.5	38.8	2.8	7.2	10.7	16.2	14.2	13.4
규모								
20명이하	18.2	13.3	2.7	5.9	5.9	3.7	3.3	3.1
21~49명	37.1	27.3	2.8	7.2	10.2	8.9	5.4	5.1
50명이상	98.5	75.4	3.2	9.4	17.2	21.3	17.6	16.4

- 주: 1)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어린이집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분석함.  
 2) 연령별 통계는 해당 연령의 아동이 있는 어린이집의 평균 아동 수임. 해당 연령이 없는 시설은 평균 분석에서 제외함.

다. 어린이집 건물 및 설비 현황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는 건물 유형을 살펴본 결과 다음 <표 II-2-8>과 같다. 전체 어린이집의 68.8%는 보육시설 전용건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동주택관리동 7.5% 단독주택 5.5%, 상가 5.2% 순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보육시설전용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법인·단체어린이집의 46.1%는 종교시설건물을 사용하는 비율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상가 12.7%, 공동주택관리동 18.4%로 다른 유형 어린이집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II-2-8> 건물 유형

단위: %, 개소

	보육 시설 전용	상가	종교 시설	복지 시설	직장 사옥	단독 주택	공동 주택 관리동	연립	다세대	기타	수
전체	68.8	5.2	2.4	3.0	0.9	5.5	7.5	0.6	0.2	3.3	41,666
설립유형											
국공립	60.1	1.2	2.2	17.6	0.1	1.2	11.5	0.0	0.0	6.2	2,732
사회복지	92.0	0.1	1.3	5.2	0.1	0.6	0.1	0.0	0.0	0.7	1,408
법인·단체	44.8	1.2	46.1	6.6	0.1	1.2	0.7	0.0	0.0	3.0	813
민간	54.9	12.7	3.6	3.9	0.0	4.9	18.4	0.2	0.1	5.5	14,431
가정	6.4	1.1	0.2	0.1	0.0	6.8	0.4	1.1	0.2	1.4	21,247
부모협동	38.1	1.3	1.9	1.3	0.7	28.4	10.3	1.3	0.0	2.6	155
직장	39.7	5.1	0.5	3.3	38.6	2.3	3.1	0.2	0.0	8.0	880
소재지											
대도시	33.1	6.2	3.0	3.3	1.4	6.1	6.3	0.6	0.2	4.2	15,391
중소도시	22.2	5.4	1.7	2.6	0.6	5.1	9.3	0.6	0.2	2.7	18,164
읍면지역	47.6	3.0	3.0	3.1	0.5	5.0	5.6	0.9	0.0	3.0	8,111
규모											
20명이하	6.5	1.2	0.2	0.3	0.1	6.9	0.6	1.1	0.2	1.6	21,593
21~49명	37.2	16.8	4.7	6.7	1.9	5.4	24.2	0.3	0.2	7.9	9,679
50명이상	76.7	2.9	4.9	4.9	1.5	2.4	6.1	0.0	0.0	2.6	10,394

주: 1)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어린이집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분석함.  
 2)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데이터는 어린이집이 건물 유형에 해당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별도의 변수별로 제시하고 있어 위 표의 수치는 전체 중 해당하는 어린이집의 비율로 해석해야 함. 총합을 100%로 해석할 필요가 없음.

<표 II-2-9>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어린이집이 등록하는 값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로 전체 어린이집 중 건물 유형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의 비율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대다수의 가정어린이집의 건물 유형인 아파트는 구분되어 있지 않아 2015년 전국보육실태 조사 자료를 다음 <표 II-2-9>에 제시하였다.

조사 대상 어린이집인 4,046개소의 건물 형태를 살펴보면 단독건물이 40.8%, 아파트가 32.8% 순서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96.3%는 단독건물이라고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가정어린이집의 86.4%는 아파트라고 응답하였다.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60.1%가 단독건물이라고 응답하였고, 공공시설복합건물이 21.8%로 다른 유형 어린이집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II-2-9〉 어린이집 건물 형태

단위: %(개소)

구분	단독 건물	아파트	관리동	상가 건물	종교 시설	공공시 설복합 건물	직장 사육	기타	계(수)
전체	40.8	32.8	8.3	5.5	5.0	4.0	2.6	1.0	100.0(4,046)
시설유형									
국공립	60.1	4.9	10.1	1.0	1.6	21.8	0.2	0.2	100.0( 506)
사회복지법인	96.3	-	0.5	-	0.9	1.9	0.4	-	100.0( 377)
법인·단체	42.0	0.4	5.4	1.4	48.6	2.2	-	-	100.0( 283)
민간	56.5	0.8	22.3	13.9	4.9	1.0	-	0.7	100.0(1,134)
가정	8.4	86.4	0.3	2.7	0.1	0.1	-	2.1	100.0(1,480)
직장	41.7	3.4	3.7	5.1	0.4	8.8	36.8	-	100.0( 266)
$\chi^2(df)$				6,500.6(35)					
소재지									
대도시	40.0	29.8	8.3	5.9	5.4	5.7	3.9	1.0	100.0(1,464)
중소도시	30.9	42.6	10.0	5.9	3.4	3.6	2.5	1.1	100.0(1,631)
읍면	59.2	20.8	5.5	4.1	7.1	2.0	0.5	0.9	100.0( 951)
$\chi^2(df)$				290.9(14)					
규모									
20명 이하	9.0	84.8	0.4	2.7	0.2	0.5	0.4	2.1	100.0(1,520)
21~39명	26.7	3.3	32.0	20.7	8.2	5.0	3.0	1.1	100.0( 625)
40~79명	58.5	0.8	11.6	4.5	10.5	8.3	5.7	0.2	100.0( 992)
80명 이상	85.1	0.3	1.8	0.7	5.0	4.7	2.5	-	100.0( 909)
$\chi^2(df)$				4,194.6(21)					

\*\*\*  $p < .001$

자료: 이미화 외(2015). 2015년 전국보육실태 조사-어린이집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66.

어린이집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 층수를 살펴보면, 1층을 사용하고 있는 비율이 93.4%로 가장 높고 2층 25.4%, 3층 11.2%으로 나타났고 지하를 사용하는 어린이집도 4.1%로 나타났다. 설립유형별로 살펴보면, 국공립어린이집과 사회복지어린이집의 경우 지하층을 사용한다는 비율이 각각 16.6%, 15.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II-2-10> 어린이집 사용 층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지하 2층	지하 1층	1층	2층	3층	4층	5층 이상	수
전체	0.0	4.1	93.4	25.4	11.2	2.2	0.2	100.0
	16	1707	38930	10598	4663	914	103	41,666
설립유형								
국공립	0.3	16.3	91.7	50.2	16.2	2.3	0.5	2,732
사회복지법인	0.0	15.1	88.8	84.1	30.3	2.3	0.1	1,408
법인·단체등	0.0	8.1	87.6	44.9	12.9	1.7	0.1	813
민간	0.0	6.3	90.8	48.8	24.4	5.4	0.5	14,431
가정	0.0	0.1	96.4	0.9	0.1	0.0	0.0	21,247
부모협동	0.0	1.3	98.7	33.6	11.0	0.0	0.0	155
직장	0.3	5.7	81.5	44.8	14.9	3.0	0.7	880
소재지								
대도시	0.1	7.0	92.3	29.9	15.3	3.7	0.5	15,391
중소도시	0.0	2.4	94.3	18.0	7.9	1.4	0.1	18,164
농어촌	0.0	2.4	93.8	33.6	10.7	1.1	0.1	8,111
규모								
20명이하	0.0	0.1	96.3	1.0	0.1	0.0	0.0	21,593
21~49명	0.0	2.6	90.1	27.2	6.2	0.6	0.1	9,679
50명이상	0.1	13.8	90.6	74.5	38.8	8.2	1.0	10,394

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어린이집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분석함.

어린이집의 평균 보육실 수와 놀이터, 사무실 등의 시설보유 유무를 살펴보면 다음 <표 II-2-11>과 같다. 전체 어린이집의 평균 보육실은 4.5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유형에 따라서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평균 7개의 보육실을 보유하여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정어린이집이 평균 3.3개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서는 규모가 커질수록 보유하고 있는 보육실도 많아졌는데 정원 50명 이상인 어린이집의 경우 평균 7.1개의 보육실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린이집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을 살펴보면, 보건/위생실과 조리실/급식실은 각각 94.6%, 87.4%로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놀이터 시설의 경우, 실외놀이터 21.6%, 인근놀이터 11.3%, 실내놀이터 8.8%, 옥상놀이터 3.9% 순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어린이집의 46.3%는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고 77.0%는 기타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11〉 어린이집당 평균 보육실 수 및 시설 보유 유무

단위: 개, %(개소)

구분	보육실	실내	실외	옥상	인근	보건/	조리/	사무	기타	
		놀이터	놀이터	놀이터	놀이터	위생	급식 실	실		
		보유 비율								
전체	4.5 (41,641)	8.8	21.6	3.9	11.3	94.6	87.4	46.3	77.0	100.0
		3667	9003	1623	4706	39407	36405	19303	32078	(41,666)
설립유형										
국공립	5.2 ( 2,731)	12.6	52.1	10.1	23.8	95.4	92.8	85.9	93.6	( 2,732)
사회복지	7.0 ( 1,407)	20.5	80.0	6.3	11.1	97.7	96.0	93.0	96.7	( 1,408)
법인·단체	5.3 ( 812)	16.9	66.3	5.2	11.7	96.8	90.8	83.9	92.4	( 813)
민간	5.7 (14,422)	12.8	36.2	8.2	18.0	95.0	89.9	70.8	88.0	(14,431)
가정	3.3 (21,235)	4.0	1.1	0.0	5.4	93.9	84.0	18.4	64.7	(21,247)
부모협동	4.0 ( 155)	6.5	14.8	2.6	9.0	90.3	83.2	52.3	81.9	( 155)
직장	5.5 ( 879)	22.1	50.5	3.8	5.0	95.3	93.6	86.7	96.6	( 880)
소재지										
대도시	4.5 (15,386)	10.1	18.5	6.1	15.1	94.1	87.0	49.2	74.7	(15,391)
중소도시	4.2 (18,147)	7.3	14.9	2.8	9.9	93.9	86.5	38.2	75.7	(18,164)
읍면지역	5.0 ( 8,108)	9.8	42.5	2.2	7.1	97.0	90.1	59.1	84.4	( 8,111)
규모										
20명이하	3.3 (21,581)	4.0	1.2	0.0	5.5	93.9	84.0	18.8	64.9	(21,593)
21~49명	4.3 ( 9,674)	6.4	13.2	1.1	11.3	95.1	89.3	66.5	86.0	( 9,679)
50명이상	7.1 (10,386)	21.1	71.9	14.6	23.4	95.6	92.7	84.7	93.9	(10,394)

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어린이집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분석함.

설립유형별로 살펴보면,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실외놀이터 보유 비율(36.2%, 1.1%)이 다른 유형에 비해 낮고 국공립어린이집의 인근놀이터 보유 비율이 23.8%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린이집의 50% 이상이 사무실 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가정어린이집의 사무실 공간 보유는 18.4%로 낮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소재지에 따라서는 읍면지역의 어린이집이 실외놀이터를 42.5% 보유하고 있어 다른 소재지에 비해 높고 대도시 소재 어린이집의 경우 다른 소재지에 비해 실내 놀이터(10.1%), 옥상놀이터(6.1%), 인근놀이터(15.1%)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어린이집의 면적을 살펴보면 다음 <표 II-2-12>와 같다. 어린이집의 평균 대지 크기는 154.83㎡, 보육실 153.47㎡, 연면적 233.73㎡로 나타났다. 놀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평균 면적을 구해본 결과, 실내놀이터는 96.1㎡, 실외놀이터가 240.0㎡, 옥상놀이터가 251.6㎡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12> 어린이집 면적

단위: m<sup>2</sup>

구분	대지	연면적	보육실	실내 놀이터	실외 놀이터	옥상 놀이터	인근 놀이터	보건/ 위생	조리/ 급식	기타
전체	154.83	233.73	153.47	96.1	240.0	251.6	957.1	16.2	13.1	59.5
설립유형										
국공립	434.0	401.1	240.5	85.5	221.1	135.6	810.0	31.4	20.2	109.7
사회복지	877.0	524.0	322.3	81.8	239.9	133.3	762.1	31.9	23.2	138.5
법인·단체	708.6	422.2	253.5	83.0	246.4	182.1	542.9	33.2	24.1	111.1
민간	174.2	341.9	227.6	133.6	249.0	291.8	1182.9	22.2	13.4	74.2
가정	10.0	98.4	71.2	23.3	52.9	105.4	502.3	7.3	10.0	17.1
부모협동	68.4	173.6	118.3	50.1	146.5	102.7	221.0	12.2	12.1	40.1
직장	815.4	580.7	297.9	106.6	286.6	224.3	3463.9	38.7	26.9	207.0
소재지										
대도시	91.2	237.2	153.3	141.0	249.0	240.0	936.2	16.0	12.3	60.2
중소도시	101.8	200.7	134.1	65.5	220.3	312.8	1034.3	14.1	12.6	50.4
읍면지역	394.3	301.2	197.1	59.7	248.0	132.5	799.5	20.9	15.5	76.9
규모										
20명이하	11.5	98.7	71.4	23.4	59.3	169.1	496.8	7.4	10.0	17.2
21~49명	106.1	202.4	138.7	43.7	181.6	87.5	985.1	15.0	11.1	43.1
50명이상	498.0	543.3	337.8	139.2	256.2	263.1	1167.0	35.1	20.6	134.2

- 주: 1)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어린이집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분석함.  
 2) 어린이집 면적은 정보공시 상의 면적이고 연면적은 보육실, 목욕실, 화장실, 조리실, 사무실, 양호실, 대지, 실내놀이터, 기타의 합계임.  
 3) 실내놀이터, 실외놀이터, 옥상놀이터, 인근놀이터, 보건/위생실, 조리/급식실, 기타 공간은 시설이 있는 어린이집에 한한 평균임. 시설이 없는 어린이집은 분석에서 제외함.

## 라. 비상재해대비시설 현황

건물 층별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기준 준수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 <표 II-2-13>과 같다. 전체 어린이집의 95.9%가 비상재해대비시설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4.0%는 전부 미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유형에 따라서는 법인·단체어린이집의 7.9%가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전부 미설치하여 다소 높게 나타났고, 소재지에 따라서는 대도시의 전부미설치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13〉 비상재해대비시설 기준 준수 여부

단위: %(개소)

구분	일부미설치	전부미설치	준수	
전체	0.1	4.0	95.9	100.0
	24	1,646	39,991	(41,666)
설립유형				
국공립	0.1	4.8	95.1	( 2,732)
사회복지	0.4	3.8	95.8	( 1,408)
법인·단체	0.0	7.9	92.1	( 813)
민간	0.1	3.4	96.5	(14,431)
가정	0.0	4.2	95.8	(21,247)
부모협동	0.0	1.3	98.7	( 155)
직장	0.1	1.7	98.2	( 880)
소재지				
대도시	0.1	6.4	93.5	(15,391)
중소도시	0.1	2.3	97.7	(18,164)
읍면지역	0.0	3.1	96.9	( 8,111)
규모				
20명이하	0.0	4.2	95.8	(21,593)
21~49명	0.1	4.2	95.8	( 9,679)
50명이상	0.2	3.3	96.5	(10,394)

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어린이집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분석함.

어린이집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재해대비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II-2-14>와 <표 II-2-15>와 같다. <표 II-2-14>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데이터 분석 결과이고 <표 II-2-15>는 2015년 전국보육실태 조사 결과이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경우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입력하는 시스템으로 데이터의 결측값이 많아 2015년 전국보육실태 조사와 차이가 있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전체 어린이집의 14.3%는 비상계단을 설치하였고, 6.9%가 미끄럼대, 4.1%가 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유형에 따라서는 법인·단체 등의 어린이집의 미끄럼대(52.2%)와 비상계단(86.0%)의 보유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2-14〉 비상재해대비시설 보유 현황

단위: %(개소)

구분	미끄럼대	미설치	비상계단	스프링클러 / 자동화재 탐지설비	직통계단 2개 이상	
전체	6.9	0.1	14.3	4.1	2.0	100.0
	2,880	43	5,947	1,703	846	(41,666)
설립유형						
국공립	17.7	0.3	24.6	7.4	4.4	( 2,732)
사회복지	8.2	0.3	15.4	1.5	2.8	( 1,408)
법인·단체	52.2	0.4	86.0	9.5	10.8	( 813)
민간	11.8	0.2	28.1	8.3	3.7	(14,431)
가정	0.3	0.0	0.5	0.1	0.0	(21,247)
부모협동	8.4	0.0	18.1	5.8	0.0	( 155)
직장	8.2	0.1	18.6	19.5	6.5	( 880)
소재지						
대도시	7.3	0.1	18.0	4.6	2.4	(15,391)
중소도시	5.2	0.1	9.5	3.0	1.6	(18,164)
읍면지역	9.9	0.1	17.9	5.5	2.3	( 8,111)
규모						
20명이하	0.3	0.0	0.6	0.1	0.0	(21,593)
21~49명	7.6	0.1	17.0	2.1	1.7	( 9,679)
50명이상	20.0	0.2	40.1	14.2	6.5	(10,394)

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어린이집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분석함.

2015년 전국보육실태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어린이집의 91.1%는 양방향 대피 비상구와 출구를 설치하였고, 자동화재탐지설비는 39.7%, 비상계단은 37.0%, 스프링클러는 33.0%의 어린이집이 설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설립유형별로 살펴보면, 직장어린이집의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비율이 모든 항목에서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II-2-15〉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및 확보 여부

단위: %(개소)

구분	양방향 대피 비상구, 출구	자동화재 탐지설비	비상 계단	스프링클러	미끄럼대	내부 직통계단 2개이상	피난층	피난교	기타 (수)
전체	91.1	39.7	37.0	33.0	13.8	6.7	2.8	1.0	2.4 (4,023)
시설유형									
국공립	90.9	52.4	40.7	38.0	21.8	7.8	1.5	1.2	2.6 ( 503)
사회복지법인	85.3	39.8	58.7	18.6	36.9	15.3	5.7	1.3	2.7 ( 377)

구분	양방향 대피 비상구, 출구	자동화재 탐지설비	비상 계단	스프링 클러	미끄 럼대	내부 직통계단 2개이상	피난층	피난교	기타	(수)
법인·단체	91.1	43.9	33.4	22.0	21.1	11.0	6.1	1.4	-	( 282)
민간	86.8	35.2	41.4	28.2	15.1	9.3	3.0	1.2	2.9	(1,127)
가정	95.3	33.0	28.6	34.9	2.5	0.5	1.8	0.6	1.6	(1,468)
직장	94.8	65.0	32.4	62.8	16.4	11.9	2.3	1.4	5.8	( 266)
소재지										
대도시	91.8	42.5	38.7	34.5	12.4	8.1	3.3	1.1	2.3	(1,452)
중소도시	91.0	36.3	35.3	33.1	11.3	4.7	1.6	0.8	1.8	(1,623)
읍면	90.3	40.9	37.2	30.4	20.4	8.0	3.9	1.3	3.4	( 948)
규모										
20명 이하	95.2	33.0	28.3	34.5	2.8	0.6	1.8	0.6	1.6	(1,508)
21~39명	91.6	32.7	22.5	22.7	7.5	3.4	1.0	0.1	2.6	( 619)
40~79명	88.8	40.4	38.1	28.9	20.7	8.6	2.8	0.7	2.4	( 987)
80명 이상	86.4	54.8	60.4	42.1	29.0	17.1	5.7	2.7	3.4	( 909)
2012년 조사	55.1	-	27.6	14.1	12.5	5.3	1.5	0.6	1.0	(4,000)

주: 중복응답 결과임.

자료: 이미화 외(2015). 2015년 전국보육실태 조사-어린이집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73

## Ⅲ. 시설 기준 개선을 위한 실태 조사 결과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시설 기준 개선을 위해 실시했던 실외놀이터, 교사실, 단독경보형감지기 의무 설치 관련 설문조사의 결과를 설치 현황과 설치 가능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 1. 조사의 개요

#### 가. 조사의 목적

본 연구는 어린이집 설치 기준 개선을 위한 실태 파악과 기준 변경 이후 적용의 효율성을 예상하기 위한 자료의 취합에 기본적인 목적이 있다. 즉,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현행 규정은 21인 이상 49인 이하 시설일 경우 100m 이내 인근 놀이터를 이용이 가능하면 실외놀이터를 반드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이 기준을 21인 이상 모든 어린이집에 실외놀이터를 설치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현황과 의견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또한 필수실로서 교사실의 설치나 화재경보기의 일종인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기준 도입과 관련해서도 현황과 가능성을 함께 살펴보는 데에도 목적을 두었다.

조사는 전국의 어린이집 표본을 대상으로 하여 교사실, 단독경보형감지기, 실외놀이터를 어느 정도 설치하고 있는지와 관련하여 현황을 살펴보고,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설의 경우 향후 설치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비용과 기간을 예상하는지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 나. 조사 시기 및 방법

조사는 2016년 7월 5일부터 2주간 실시되었다. 설문 문항을 조사를 위한 웹페이지에 탑재하고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에 공지하여 자발적으로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웹상에서 응답을 하고 응답 자료가 전산에 의해 자동으로 코딩 처리될 수 있도록 하였다.

## 다. 조사 참여 시설

실태 조사에 참여한 어린이집은 총 1,950개소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이 250개소로 12.8%, 민간어린이집이 727개소로 37.3%,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84개소(4.3%) 등이고 가정어린이집이 731개소(37.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 외에도 법인단체, 직장, 부모협동어린이집이 각각 58개소, 91개소, 9개소 참여하였다.

이러한 유형별 참여비율을 실제 어린이집 유형별 개소 수 구성과 비교해보면, 국공립과 직장어린이집의 참여 수가 비중에 비해 과다하게 많은 경향이 있고 가정어린이집의 참여가 실제 수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새로운 시설설비의 설치를 검토하는 조사를 제시하여 21인 이상 어린이집에 상대적으로 큰 관심을 두고 있으므로 가정어린이집의 설문 참여가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이해된다. 수합된 자료 또한 가정어린이집보다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민간 등의 어린이집 실태 자료가 더 유용한 까닭에 조사 참여 시설 수는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다.

〈표 III-1-1〉 조사 참여 시설(표본)의 모수 대비 비율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법인· 단체	민간	가정	부모 협동	직장	계(수)
전체 A	2,732	1,408	813	14,431	21,247	155	880	41,666
	6.6	3.4	2.0	34.6	51.0	0.4	2.1	100.0
표본 B	250	84	58	727	731	9	91	1,950
(참여자)	12.8	4.3	3.0	37.3	37.5	0.5	4.6	100.0
B/A <sup>1)</sup>	9.2	6.0	7.1	5.0	3.4	5.8	10.3	3.4

주<sup>1)</sup>: 전체 모수치 대비 해당 시설 유형의 표본 비율로, 가정어린이집을 제외하면 모두 모수의 5% 이상 표본 크기를 보이고 있고, 직장어린이집은 모수의 10.3%, 국공립은 9.2%가 표본에 포함됨으로써 이를 감안하여 결과를 이해하는 편이 유용하다.

조사 참여시설을 인건비 정부지원시설과 미지원시설로 구분해보면 각각 17.1%와 82.9%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에 위치한 어린이집이 40.7%, 중소도시 39.5%, 농어촌 19.8%의 분포를 보였으며 정원규모별로 보면 가정어린이집이 많은 까닭에 20인 이하가 38.7%를 차지하고 21인 이상 49인 이하 규모가 27.8%, 50인 이상이 33.5%를 차지하였다. 개원연도별로 응답 어린이집 수를 살펴보면 2006년을 기준으로 이전 설립이 46.1%, 이후 설립은 53.9%로 나타나 개원한 지 10년 이내인 시설이 과반 이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II-1-2〉 조사 참여시설의 특성

		단위: (명), %	
구분	수	계	
전체	(1,950)	100.0	
인건비정부지원 여부			
인건비미지원시설	(1,616)	82.9	
인건비지원시설	( 334)	17.1	
설립유형			
국공립	( 250)	12.8	
민간	( 727)	37.3	
사회복지법인	( 84)	4.3	
가정	( 731)	37.5	
법인단체	( 58)	3.0	
직장	( 91)	4.7	
부모협동	( 9)	0.5	
지역규모			
대도시	( 794)	40.7	
중소도시	( 770)	39.5	
농어촌	( 386)	19.8	
정원규모			
20인 이하	( 754)	38.7	
21인 이상~49인 이하	( 543)	27.8	
50인 이상	( 653)	33.5	
개원년도			
2011년 이후	( 541)	27.7	
2006 ~ 2010년	( 510)	26.2	
2001 ~ 2005년	( 410)	21.0	
2000년 이전	( 489)	25.1	

## 2. 설치 실태

조사 결과는 필수실로서의 교사실 설치,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21인 이상 49인 이하 시설의 실외놀이터 설치 등 3개 주제에 대해 각각 제시하고자 한다.

### 가. 교사실

어린이집에 교사실이 설치되어 있는 비율을 살펴보면, 조사 결과상 교사실이 있다는 어린이집이 52.2%로 나왔다. 설립유형별로는 직장어린이집이 85.7%의 가장

높은 비율로 교사실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법인어린이집 72.6%, 법인단체 69.0%, 국공립 68.4%의 순이었다. 민간어린이집은 62.7%였고 규모가 작고 공간이 좁은 편인 가정어린이집은 28.2%가 교사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응답을 통해 직장어린이집의 교사 근무 환경이 비교적 우수한 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기 힘들으나 법인시설이 많은 농어촌지역에서 교사실 설치비율이 높았고 정원 규모가 클수록 설치비율이 높았다.

〈표 III-2-1〉 교사실 구비 실태

					단위:%, (명)
구분	있음	없음	계	(수)	$\chi^2(df)$
전체	52.2	47.8	100.0	(1,950)	
인건비정부지원 여부					
인건비미지원시설	48.6	51.4	100.0	(1,616)	48.4(1) <sup>***</sup>
인건비지원시설	69.5	30.5	100.0	( 334)	
설립유형					
국공립	68.4	31.6	100.0	( 250)	289.1(6) <sup>***</sup>
민간	62.7	37.3	100.0	( 727)	
법인	72.6	27.4	100.0	( 84)	
가정	28.2	71.8	100.0	( 731)	
법인단체	69.0	31.0	100.0	( 58)	
직장	85.7	14.3	100.0	( 91)	
부모협동	55.6	44.4	100.0	( 9)	
지역규모					
대도시	51.3	48.7	100.0	( 794)	7.5(2) <sup>*</sup>
중소도시	50.0	50.0	100.0	( 770)	
농어촌	58.3	41.7	100.0	( 386)	
정원규모					
20인 이하	29.3	70.7	100.0	( 754)	342.3(2) <sup>***</sup>
21인 이상~49인 이하	51.9	48.1	100.0	( 543)	
50인 이상	78.7	21.3	100.0	( 653)	
개원년도					
2011년 이후	50.8	49.2	100.0	( 541)	43.0(3) <sup>***</sup>
2006 ~ 2010년	43.7	56.3	100.0	( 510)	
2001 ~ 2005년	50.2	49.8	100.0	( 410)	
2000년 이전	64.0	36.0	100.0	( 489)	

\*  $p < .05$     \*\*\*  $p < .001$

교사실이 설치되었다고 응답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교사실의 형태를 살펴보면 별도의 교사실 공간을 마련하여 독립 실로 설치된 곳이 46.5%였고 원장실의

일부로 연결되어 있거나 한편에 마련된 공간을 교사실로 이용하는 곳이 38.7%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였다. 원장실이 아닌 다른 실의 일부에 교사실이 설치되어 있다는 응답 비율은 14.7%였다.

별도의 독립공간으로 교사실이 설치되어 있다고 응답한 어린이집의 비율을 살펴보면 가정어린이집을 제외하면 설립유형별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직장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이 가장 독립공간에 교사실 설치하였다는 비율이 높았다(부모협동 제외). 농어촌보다는 대도시 지역에서 별도의 교사실 설치비율이 높고 규모가 큰 시설일수록 또한 그러하였다.

〈표 III-2-2〉 교사실 공간 형태

단위:%, (명)

구분	별도 교사실 공간	원장실의 일부	다른 방의 일부	계	(수)	$\chi^2(df)$
전체	46.5	38.7	14.7	100.0	(1,017)	
인건비정부지원 여부						
인건비미지원시설	43.8	41.5	14.6	100.0	( 785)	12.3(2) **
인건비지원시설	55.6	29.3	15.1	100.0	( 232)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56.7	31.0	12.3	100.0	( 171)	69.7(12) ***
민간	50.2	36.0	13.8	100.0	( 456)	
사회복지법인	52.5	24.6	23.0	100.0	( 61)	
가정	23.8	57.3	18.9	100.0	( 206)	
법인단체	45.0	32.5	22.5	100.0	( 40)	
직장	57.7	37.2	5.1	100.0	( 78)	
부모협동	60.0	40.0	0.0	100.0	( 5)	
지역규모						
대도시	51.6	34.2	14.3	100.0	( 407)	9.6(4) *
중소도시	41.8	43.9	14.3	100.0	( 385)	
농어촌	45.3	38.2	16.4	100.0	( 225)	
정원규모						
20인 이하	24.4	57.5	18.1	100.0	( 221)	108(4) ***
21인 이상~49인 이하	36.2	48.2	15.6	100.0	( 282)	
50인 이상	61.7	25.5	12.8	100.0	( 514)	
개원년도						
2011년 이후	43.3	45.5	11.3	100.0	( 275)	22.1(6) **
2006 ~ 2010년	43.5	39.9	16.6	100.0	( 223)	
2001 ~ 2005년	41.3	43.2	15.5	100.0	( 206)	
2000년 이전	55.0	29.1	16.0	100.0	( 313)	

\*  $p < .05$     \*\*  $p < .01$     \*\*\*  $p < .001$

현재 어린이집에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교사실의 평균 면적은 19.5㎡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실이 설치되어 있다는 어린이집만을 대상으로 질문한 결과이다. 교사실 면적이 9㎡에서 12㎡인 어린이집이 20.6%로 가장 많았고 5㎡에서 8㎡인 경우가 18.7%, 25㎡이상인 경우가 17.8%로 조사되었다.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서는 법인단체와 직장의 평균 교사실 면적이 각각 27.0㎡와 27.3㎡로 다른 유형과 비교하였을 때 적게는 약 10㎡에서 많게는 20㎡정도 더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협동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교사실의 면적이 7.4㎡로 가장 작았다. 또한 대도시에 위치한 어린이집의 교사실 면적이 중소도시와 농어촌에 위치한 어린이집의 교사실 면적보다 넓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원규모가 클수록 교사실의 면적이 넓었다.

〈표 III-2-3〉 교사실 면적

단위: %, (명)											
면적 구분(㎡)	1~4	5-8	9-12	13~16	16~20	20~24	25 이상	계	(수)	평균 (㎡)	$\chi^2(df)$
전체	8.2	18.7	20.6	12.3	16.4	6.1	17.8	1000	(1,017)	19.5	
인건비정부지원 여부											
인건비지원시설	8.9	20.5	19.9	11.6	15.8	5.7	17.6	1000	( 785)	19.6	12.4
인건비지원시설	5.6	12.5	22.8	14.7	18.5	7.3	18.5	1000	( 232)	18.9	(6)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7.0	13.5	25.7	12.3	16.4	8.2	17.0	1000	( 171)	18.7	
민간	4.8	17.1	21.3	12.9	20.0	6.6	17.3	1000	( 456)	19.9	
사회복지법인	1.6	9.8	14.8	21.3	24.6	4.9	23.0	1000	( 61)	19.4	
가정	22.8	35.4	17.0	8.7	7.8	0.0	8.3	1000	( 206)	15.1	
법인단체	0.0	5.0	32.5	12.5	15.0	12.5	22.5	1000	( 40)	27.0	218.3
직장	0.0	7.7	11.5	11.5	14.1	12.8	42.3	1000	( 78)	27.3	(36)***
부모협동	20.0	40.0	40.0	0.0	0.0	0.0	0.0	1000	( 5)	7.4	
지역규모											
대도시	6.4	21.4	19.2	11.5	17.0	6.6	17.9	1000	( 407)	22.1	
중소도시	11.2	21.3	21.0	12.5	13.2	5.2	15.6	1000	( 385)	17.0	30.2
농어촌	6.2	9.3	22.2	13.3	20.9	6.7	21.3	1000	( 225)	18.9	(12)**
정원규모											
20인 이하	23.1	33.9	18.6	8.6	7.7	0.0	8.1	1000	( 221)	15.3	
21인 이상~49인 이하	7.1	22.0	24.1	12.4	14.5	6.0	13.8	1000	( 282)	18.3	199.5
50인 이상	2.3	10.3	19.5	13.8	21.2	8.8	24.1	1000	( 514)	21.9	(12)***
개원년도											
2011년 이후	13.8	21.8	21.8	9.8	11.6	4.4	16.7	1000	(275)	15.8	
2006 ~ 2010년	8.1	22.0	18.8	12.1	16.6	6.7	15.7	1000	(223)	18.7	47.9
2001 ~ 2005년	7.8	18.9	22.8	13.1	18.9	3.9	14.6	1000	(206)	20.2	(18)
2000년 이전	3.5	13.4	19.2	14.1	18.8	8.6	22.4	1000	(313)	22.8	***

\*\*  $p < .01$  \*\*\*  $p < .001$

### 나. 단독경보형감지기

비상재해대비시설로서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두고 있는 비율을 살펴보면 응답 시설의 71.2%가 설치를 이미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8.8%가 아직 설치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시설설립유형별로는 직장어린이집과 부모협동, 국공립어린이집의 순서로 설치비율이 높았고 특히 직장어린이집의 경우는 87.9%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어린이집의 특성을 생각할 때 사업장내 일부 건물을 사용한다고 보면 규모가 큰 사업장과 동일한 조건을 갖추게 되므로 설치비율이 높은 것으로 유추된다. 국공립도 75.6%로 상당히 높은 설치율을 보였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인이나 법인단체는 60%대의 비교적 낮은 설치율을 나타내었다. 도시지역일수록, 그리고 규모가 클수록 설치율이 높았다.

〈표 III-2-4〉 단독경보형감지기 장착 여부

단위: %, (명)

구분	설치되어 있음	설치되어 있지 않음	계	(수)	$\chi^2(df)$
전체	71.2	28.8	100.0	(1,950)	
인건비정부지원 여부					
인건비미지원시설	70.9	29.1	100.0	(1,616)	0.5(1)
인건비지원시설	72.8	27.2	100.0	(334)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75.6	24.4	100.0	(250)	20.1(6)**
민간	70.0	30.0	100.0	(727)	
사회복지법인	64.3	35.7	100.0	(84)	
가정	70.3	29.7	100.0	(731)	
법인단체	62.1	37.9	100.0	(58)	
직장	87.9	12.1	100.0	(91)	
부모협동	77.8	22.2	100.0	(9)	
지역규모					
대도시	72.9	27.1	100.0	(794)	2.1(2)
중소도시	70.5	29.5	100.0	(770)	
농어촌	69.2	30.8	100.0	(386)	
정원규모					
20인 이하	70.4	29.6	100.0	(754)	33.0(2)***
21인 이상~49인 이하	63.5	36.5	100.0	(543)	
50인 이상	78.6	21.4	100.0	(653)	
개원년도					
2011년 이후	73.9	26.1	100.0	(541)	8.8(3)*
2006 ~ 2010년	74.1	25.9	100.0	(510)	
2001 ~ 2005년	68.5	31.5	100.0	(410)	
2000년 이전	67.5	32.5	100.0	(489)	

\*\*  $p < .01$  \*\*\*  $p < .001$

## 다. 실외놀이터

실외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비율을 살펴보면 자체 놀이터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1.5%이고 인근의 공원 등 공공 실외놀이터를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61.0%를 차지하였다. 실외놀이터가 전혀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17.5%였는데, 21인 이상 49인 이하 시설에서 자체 놀이터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인근 사용 가능한 놀이터가 있어야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17.5%는 실외놀이터를 전혀 이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장 시설의 경우는 예외인 사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38.6%가 실외놀이터가 없는 것으로 응답되었고 사회복지법인이나 법인단체어린이집의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수가 실외놀이터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이 농어촌 지역보다 놀이터 설치비율이 낮았다.

〈표 III-2-5〉 실외놀이터 설치 여부(21인 이상 49인 이하 시설의 경우)

단위: %, (명)

구분	인근 놀이터 이용	실외놀이터 있음	실외놀이터 없음	계	(수)	$\chi^2(df)$
전체	61.0	21.5	17.5	100.0	(543)	
인건비정부지원 여부						
인건비미지원시설	60.2	21.7	18.1	100.0	(452)	0.9(2)
인건비지원시설	64.8	20.9	14.3	100.0	( 91)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67.5	19.3	13.3	100.0	( 83)	30.6(10) ***
민간	64.3	19.9	15.8	100.0	(387)	
사회복지법인	37.5	37.5	25.0	100.0	( 8)	
법인단체	42.1	42.1	15.8	100.0	( 19)	
직장	34.1	27.3	38.6	100.0	( 44)	
부모협동	0.0	50.0	50.0	100.0	( 2)	
지역규모						
대도시	59.6	16.0	24.4	100.0	(213)	44.3(4) ***
중소도시	69.0	17.2	13.8	100.0	(232)	
농어촌	44.9	43.9	11.2	100.0	( 98)	
개원년도						
2011년 이후	65.7	17.5	16.9	100.0	(166)	11.0(6)
2006 ~ 2010년	63.1	20.6	16.3	100.0	(141)	
2001 ~ 2005년	62.0	17.6	20.4	100.0	(108)	
2000년 이전	51.6	31.3	17.2	100.0	(128)	

\*\*\*  $p < .001$

실외놀이터를 설치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설치 시 놀이기구, 바닥재 등 투입되는 모든 기자재를 포함하여 어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었는지 질문하였다. 평균적으로 약 1,721만원의 비용이 든 것으로 나타났고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가 38.5%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1000만원 미만인 경우가 29.1%, 2000만원에서 5000만원 미만인 경우가 27.4% 순으로 많았고, 설치비용이 5000만원에서 1억 미만인 경우와 1억 이상인 경우는 동일하게 2.6%로 매우 적게 나타났다.

개원년도가 2011년 이후인 어린이집의 경우에 평균 실외놀이터 설치비용이 약 2460만원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2000년 이전에 개원한 시설에서의 설치비용이 1427만원으로 조사된 것과 비교하였을 때 1000만원 가량 높은 수치이다. 또한 20001년에서 2005년에 개원하거나 2006년에서 2010년에 개원한 경우를 살펴봐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설치비용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놀이기구, 바닥재 등 투입되는 기자재의 비용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여 실외놀이터 설치비용에 반영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겠다. 더불어 어린이 놀이시설물 안전기준법 시행과 관련하여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사료된다.

〈표 III-2-6〉 실외놀이터 설치비용

단위: %, (명)

구분	1000 만원 미만	1000~ 2000 만원 미만	2000~ 5000 만원 미만	5000~ 1억 미만	1억 이상	계	(수)	평균 (만원)	$\chi^2(df)$
전체	29.1	38.5	27.4	2.6	2.6	100.0	(117)	1721.4	
인건비정부지원 여부									
인건비미지원시설	31.6	35.7	26.5	3.1	3.1	100.0	( 98)	1763.3	3.9(4)
인건비지원시설	15.8	52.6	31.6	0.0	0.0	100.0	( 19)	1505.1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12.5	50.0	37.5	0.0	0.0	100.0	( 16)	1612.3	23.1(20)
민간	33.8	37.7	24.7	1.3	2.6	100.0	( 77)	1646.4	
사회복지법인	33.3	66.7	0.0	0.0	0.0	100.0	( 3)	933.3	
법인단체 직장	37.5	12.5	50.0	0.0	0.0	100.0	( 8)	1750.0	
부모협동	16.7	33.3	25.0	16.7	8.3	100.0	( 12)	2585.8	
부모협동	0.0	100.0	0.0	0.0	0.0	100.0	( 1)	1000.0	
지역규모									
대도시	26.5	44.1	23.5	5.9	0.0	100.0	( 34)	1506.1	9.4(8)
중소도시	37.5	25.0	32.5	0.0	5.0	100.0	( 40)	1691.3	
농어촌	23.3	46.5	25.6	2.3	2.3	100.0	( 43)	1919.7	
개원년도									
2011년 이후	34.5	17.2	37.9	3.4	6.9	100.0	( 29)	2459.7	21.6(12)*
2006 ~ 2010년	20.7	55.2	20.7	0.0	3.4	100.0	( 29)	1528.6	
2001 ~ 2005년	42.1	26.3	21.1	10.5	0.0	100.0	( 19)	1507.9	
2000년 이전	25.0	47.5	27.5	0.0	0.0	100.0	( 40)	1427.3	

\*  $p < .05$

실외놀이터 설치 공사를 완료하는 데 걸린 기간은 평균 18일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외놀이터 설치 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가 47.9%로 가장 많았고 10일 이상에서 20일 미만인 경우가 20.5%, 30일 이상에서 60일 미만인 경우가 18.8%의 순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유형별로 살펴보면 직장이 21.7일로 실외놀이터 설치 기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협동이 10일로 비교적 짧았다. 개원년도는 2011년 이후가 29.2일로 다른 시기에 개원한 경우보다 길었으며 어린이집 소재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2-7〉 실외놀이터 설치 기간

단위: %, (명), (일)

구분	10일 미만	10일 ~ 20일 미만	20일 ~ 30일 미만	30일 ~ 60일 미만	60일 이상	모름/ 무응답	계	(수)	평균 (일)	$\chi^2(df)$
전체	47.9	20.5	3.4	18.8	6.8	2.6	100.0	(117)	18.0	
인건비정부지원 여부										
인건비지원시설	51.0	17.3	3.1	18.4	8.2	2.0	100.0	( 98)	18.6	6.7(5)
인건비지원시설	31.6	36.8	5.3	21.1	0.0	5.3	100.0	( 19)	14.6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31.3	43.8	6.3	18.8	0.0	0.0	100.0	( 16)	14.1	29.3(25)
민간	50.6	15.6	3.9	19.5	7.8	2.6	100.0	( 77)	18.6	
사회복지법인	33.3	0.0	0.0	33.3	0.0	33.3	100.0	( 3)	18.5	
법인단체	50.0	25.0	0.0	25.0	0.0	0.0	100.0	( 8)	14.9	
직장	58.3	16.7	0.0	8.3	16.7	0.0	100.0	( 12)	21.7	
부모협동	0.0	100.0	0.0	0.0	0.0	0.0	100.0	( 1)	10.0	
지역규모										
대도시	52.9	11.8	5.9	17.6	8.8	2.9	100.0	( 34)	18.1	9.9(10)
중소도시	42.5	17.5	2.5	30.0	5.0	2.5	100.0	( 40)	18.1	
농어촌	48.8	30.2	2.3	9.3	7.0	2.3	100.0	( 43)	17.8	
정원규모										
21인 이상~50인 미만	47.9	20.5	3.4	18.8	6.8	2.6	100.0	(117)	18.0	
개원년도										
2011년 이후	41.4	20.7	0.0	17.2	20.7	0.0	100.0	( 29)	29.2	22.2(15)
2006 ~ 2010년	48.3	24.1	6.9	13.8	0.0	6.9	100.0	( 29)	11.7	
2001 ~ 2005년	52.6	31.6	0.0	15.8	0.0	0.0	100.0	( 19)	10.9	
2000년 이전	50.0	12.5	5.0	25.0	5.0	2.5	100.0	( 40)	17.4	

### 3. 향후 설치에 대한 의견

#### 가. 교사실

##### 1) 설치 가능 공간 유무

현재 교사실을 설치하고 있지 않은 어린이집의 경우 교사실을 설치해야 한다면 설치할 만한 공간이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10.3%는 공간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89.7%는 교사실용 공간이 없다고 응답했다. 직장어린이집과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에서 설치 공간이 있다는 응답이 높았고 국공립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정원 50인 이상의 규모가 큰 시설에서 공간이 있다는 응답이 2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설치 가능성을 보였고, 개원연도별로는 2001년 이후 설치된 비교적 신규 시설이 9.4~12.7% 수준에서 설치 공간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 III-3-1〉 교사실 설치 공간 구비 여부

단위: %, (명)

구분	있음	없음	계	(수)	$\chi^2(df)$
전체	10.3	89.7	100.0	(933)	
인건비정부지원 여부					
인건비미지원시설	10.5	89.5	100.0	(831)	0.3(1)
인건비지원시설	8.8	91.2	100.0	(102)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6.3	93.7	100.0	( 79)	14.2(6)*
민간	14.8	85.2	100.0	(271)	
사회복지법인	17.4	82.6	100.0	( 23)	
가정	8.0	92.0	100.0	(525)	
법인단체	11.1	88.9	100.0	( 18)	
직장	23.1	76.9	100.0	( 13)	
부모협동	0.0	100.0	100.0	( 4)	
지역규모					
대도시	12.9	87.1	100.0	(387)	8.9(2)*
중소도시	6.8	93.2	100.0	(385)	
농어촌	12.4	87.6	100.0	(161)	
정원규모					
20인 이하	8.1	91.9	100.0	(533)	17.6(2)***
21인 이상~49인 이하	9.6	90.4	100.0	(261)	
50인 이상	20.1	79.9	100.0	(139)	
개원연도					
2011년 이후	9.4	90.6	100.0	(266)	2.2(3)
2006 ~ 2010년	10.5	89.5	100.0	(287)	
2001 ~ 2005년	12.7	87.3	100.0	(204)	
2000년 이전	8.5	91.5	100.0	(176)	

\*  $p < .05$  \*\*\*  $p < .001$

## 2) 교사실 설치 예상 비용

실내 집기를 포함하고 시설 재정비를 통해 교사실을 설치할 경우 얼마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평균 10,864천원을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를 예상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0만원에서 750만원 사이도 상당히 높은 비율로 응답되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가 중소도시나 농어촌보다 더 큰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고 정원규모는 클수록 예상 비용이 컸다.

〈표 III-3-2〉 교사실 설치 시 예상 소요 비용

단위: %, (명)

구분	250 만원 미만	250 만원 ~ 500 만원 미만	500 만원 ~ 750 만원 미만	750 만원 ~1000 만원 미만	1000 만원 ~3000 만원 미만	3000 만원 ~5000 만원 미만	5000 만원 이상	계	(수)	평균 (만원)	$\chi^2(df)$
전체	20.4	15.3	25.1	1.7	29.6	4.7	3.2	100.0	(933)	1086.4	
인건비정부지원 여부											
인건비지원시설	22.3	16.4	25.8	1.7	27.7	3.6	2.6	100.0	(831)	1018.5	56.9(6)***
인건비지원시설	4.9	6.9	19.6	2.0	45.1	13.7	7.8	100.0	(102)	1639.7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6.3	6.3	24.1	2.5	43.0	8.9	8.9	100.0	( 79)	1514.6	208.8(36)***
민간	11.8	12.5	28.0	1.8	34.7	6.3	4.8	100.0	(271)	1420.6	
사회복지법인	0.0	8.7	4.3	0.0	52.2	30.4	4.3	100.0	( 23)	2069.6	
가정	28.8	19.2	25.1	1.3	23.0	1.3	1.1	100.0	(525)	756.6	
법인단체	5.6	5.6	11.1	11.1	44.4	16.7	5.6	100.0	( 18)	1561.1	
직장	0.0	0.0	30.8	0.0	46.2	23.1	0.0	100.0	( 13)	1538.5	
부모협동	25.0	0.0	0.0	0.0	25.0	0.0	50.0	100.0	( 4)	4025.0	
지역규모											
대도시	22.7	15.5	22.2	2.6	28.7	5.2	3.1	100.0	(387)	1102.8	14.8(12)
중소도시	20.0	14.5	27.8	1.3	30.4	3.1	2.9	100.0	(385)	1069.9	
농어촌	15.5	16.8	25.5	0.6	29.8	7.5	4.3	100.0	(161)	1086.6	
정원규모											
20인 이하	28.7	18.9	25.1	1.3	23.1	1.5	1.3	100.0	(533)	775.9	134.4(12)***
21인 이상~49인 이하	11.1	12.6	28.4	1.9	34.5	6.9	4.6	100.0	(261)	1429.1	
50인 이상	5.8	6.5	18.7	2.9	45.3	12.9	7.9	100.0	(139)	1634.0	
개원년도											
2011년 이후	22.6	18.0	27.1	1.1	25.2	4.1	1.9	100.0	(266)	912.5	32.3(18)*
2006 ~ 2010년	22.3	16.7	23.7	0.7	30.0	2.8	3.8	100.0	(287)	1111.8	
2001 ~ 2005년	21.6	11.3	25.0	2.9	31.9	5.4	2.0	100.0	(204)	921.2	
2000년 이전	12.5	13.6	24.4	2.8	33.0	8.0	5.7	100.0	(176)	1499.5	

\*  $p < .05$  \*\*\*  $p < .001$

### 3) 교사실 설치 완료 예상 시기

교사실 설치를 연내에 시행한다고 가정할 때 교사실 설치를 언제까지 완료할 수 있다고 보는지 알아본 결과, 원장들의 33.9%가 결코 교사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답하여 전체의 1/3 정도의 비율이 교사실 설치에 매우 부정적인 입장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 시점부터 1년 정도인 2017년 상반기 이내에 설치하겠다는 비율이 22.8%였고 2017년 하반기까지는 총 38.9%가 설치 의지를 보여 가까운 시기에 설치할 수 있다는 응답도 상당히 있다고 보겠다. 그럼에도 가장 높은 비율인 21.7%는 2년 이상 후인 2018년 하반기를 설치 완료시기로 보았다. 설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비율은 사회복지법인, 국공립 등의 인건비지원시설이 미지원시설보다 차이 나게 높았다. 하지만 2018년 하반기 이후 시점이 불확실한 시기까지 실제 설치를 미루어 놓는 곳 또한 인건비지원시설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 정책을 지지하고 준수하고자 하는 태도는 보이거나 실제 시행에 옮기는 데 있어서는 미지원시설 이상으로 장애물이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표 III-3-3〉 교사실 설치 의무화 시 예상 설치 완료 시기

단위: %, (명)

구분	2016년 연내	2017년 상반기	2017년 하반기	2018년 상반기	2018년 하반기	설치 하지 않겠음	계	(수)	$\chi^2(df)$
전체	9.3	13.5	16.1	5.6	21.7	33.9	100.0	(933)	
인건비정부지원 여부									
인건비지원시설	8.7	13.6	16.0	5.1	21.2	35.5	100.0	(831)	14.1(5)*
인건비지원시설	14.7	12.7	16.7	9.8	25.5	20.6	100.0	(102)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11.4	13.9	16.5	7.6	27.8	22.8	100.0	( 79)	46.5(30)*
민간	8.9	13.3	20.3	4.1	21.4	32.1	100.0	(271)	
사회복지법인	26.1	8.7	17.4	17.4	17.4	13.0	100.0	( 23)	
가정	8.6	13.5	13.3	5.3	21.0	38.3	100.0	(525)	
법인단체	0.0	11.1	27.8	11.1	22.2	27.8	100.0	( 18)	
직장 부모협동	23.1 0.0	23.1 25.0	23.1 0.0	7.7 0.0	15.4 50.0	7.7 25.0	100.0 100.0	( 13) ( 4)	
지역규모									
대도시	11.4	12.7	14.7	6.2	21.4	33.6	100.0	(387)	5.6(10)
중소도시	8.3	13.5	16.6	5.5	22.1	34.0	100.0	(385)	
농어촌	6.8	15.5	18.0	4.3	21.1	34.2	100.0	(161)	
정원규모									
20인 이하	8.8	13.5	13.3	5.4	21.0	37.9	100.0	(533)	24.2(10)**
21인 이상~49인 이하	9.6	13.0	17.6	4.2	21.8	33.7	100.0	(261)	
50인 이상	10.8	14.4	23.7	8.6	23.7	18.7	100.0	(139)	

구분	2016년 연내	2017년 상반기	2017년 하반기	2018년 상반기	2018년 하반기	설치 하지 않겠음	계	(수)	$\chi^2(df)$
개원년도									
2011년 이후	10.2	15.8	15.8	4.5	16.2	37.6	100.0	(266)	19.4(15)
2006 ~ 2010년	8.0	12.9	16.7	5.6	24.7	32.1	100.0	(287)	
2001 ~ 2005년	9.3	13.2	12.7	4.4	22.5	37.7	100.0	(204)	
2000년 이전	10.2	11.4	19.3	8.5	23.9	26.7	100.0	(176)	

\*  $p < .05$  \*\*  $p < .01$

#### 4) 교사실 설치 불가 이유

교사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원장들에게 그 이유를 응답하게 하였다. 가장 높은 비율인 66.8%가 설치 공간이 없기 때문이라고 답하였고 설치비용 부족이나 설치필요성 없음이 각각 18.4%, 13.9%로 공간부족과는 선택 비율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설치 공간이 없다는 응답은 국공립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가정어린이집보다도 10%p 이상 높은 응답이었다. 대도시 지역은 설치 공간 부족을 이유로 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반면 농어촌은 설치비용 부족 항목에 다른 지역보다 응답율이 높았다. 비슷한 경향이 시설 규모면에서도 나타나는데, 규모가 큰 시설에서는 설치비용 부족을 미설치 이유로 비교적 많이 꼽았다.

〈표 III-3-4〉 교사실을 설치하지 않으려는 이유

구분	설치 공간 없음	설치 비용 부족	설치 필요성 없음	폐원 예정	모름/ 무응답	계	(수)	$\chi^2(df)$
전체	66.8	18.4	13.9	0.6	0.3	100.0	(316)	
인건비정부지원 여부								
인건비미지원시설	66.8	18.0	14.6	0.3	0.3	100.0	(295)	7.9 (4)
인건비지원시설	66.7	23.8	4.8	4.8	0.0	100.0	(21)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77.8	22.2	0.0	0.0	0.0	100.0	(18)	65.9(24)***
민간	63.2	23.0	12.6	0.0	1.1	100.0	(87)	
사회복지법인	0.0	33.3	33.3	33.3	0.0	100.0	(3)	
가정	67.2	16.4	15.9	0.5	0.0	100.0	(201)	
법인단체	100.0	0.0	0.0	0.0	0.0	100.0	(5)	
직장	100.0	0.0	0.0	0.0	0.0	100.0	(1)	
부모협동	100.0	0.0	0.0	0.0	0.0	100.0	(1)	

구분	설치 공간 없음	설치 비용 부족	설치 필요성 없음	폐원 예정	모름/ 무응답	계	(수)	$\chi^2(df)$
지역규모								
대도시	67.7	19.2	13.1	0.0	0.0	100.0	(130)	6.9(8)
중소도시	66.4	15.3	16.8	0.8	0.8	100.0	(131)	
농어촌	65.5	23.6	9.1	1.8	0.0	100.0	( 55)	
정원규모								
20인 이하	67.3	16.3	15.8	0.5	0.0	100.0	(202)	21.1(8)**
21인 이상~49인 이하	69.3	19.3	11.4	0.0	0.0	100.0	( 88)	
50인 이상	53.8	30.8	7.7	3.8	3.8	100.0	( 26)	
개원년도								
2011년 이후	69.0	19.0	10.0	1.0	1.0	100.0	(100)	18.9(12)
2006 ~ 2010년	67.4	9.8	22.8	0.0	0.0	100.0	( 92)	
2001 ~ 2005년	63.6	24.7	11.7	0.0	0.0	100.0	( 77)	
2000년 이전	66.0	23.4	8.5	2.1	0.0	100.0	( 47)	

\*\*  $p < .01$  \*\*\*  $p < .001$

## 나. 단독경보형감지기

### 1) 설치 완료 예상 시기

단독경보형감지기를 현재 설치하고 있지 않은 시설을 대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다면 언제까지 설치 완료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알아보았다. 이에 대해 가장 많은 수인 36.2%가 올해(2016년) 이내로 완료가 가능하다고 응답하였고 2017년 상반기까지로 범위를 살펴보면 과반수가 넘는 55.8%가 설치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가장 장기적으로 기간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13.0%는 2018년 이후 설치가 가능하다고 응답하였고 14.3%는 설치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유형별로 보면 인건비지원시설의 경우 66%가 내년 상반기까지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았으나 인건비미지원시설은 53.8%가 내년 상반기를 푼고 29.3%는 2018년 이후나 설치하지 않겠다는 응답을 보여 차이를 나타내었다. 세부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은 90.9%, 국공립은 73.8%, 법인단체는 72.7%가 올해 또는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 가능하다고 응답하였고 민간은 50.5%, 가정은 53.5%, 사회복지법인인 50%가 그러하다고 하였다.

〈표 III-3-5〉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의무화 시 예상 설치 완료 시기

단위: %, (명)

구분	2016년 연내	2017년 상반기	2017년 하반기	2018년 상반기	2018년 하반기	설치하지 않겠음	계 (수)	$\chi^2(df)$
전체	36.2	19.6	13.7	3.2	13.0	14.3	100.0 (561)	
인건비정부지원 여부								
인건비미지원시설	34.5	19.4	14.3	2.6	14.0	15.3	100.0 (470)	11.6(5)*
인건비지원시설	45.1	20.9	11.0	6.6	7.7	8.8	100.0 ( 91)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52.5	21.3	8.2	8.2	4.9	4.9	100.0 ( 61)	51.4(30)**
민간	29.4	21.1	18.3	3.2	16.1	11.9	100.0 (218)	
사회복지법인	30.0	20.0	16.7	3.3	13.3	16.7	100.0 ( 30)	
가정	36.9	16.6	10.6	2.3	12.9	20.7	100.0 (217)	
법인단체	40.9	31.8	9.1	0.0	13.6	4.5	100.0 ( 22)	
직장	72.7	18.2	9.1	0.0	0.0	0.0	100.0 ( 11)	
부모협동	50.0	0.0	50.0	0.0	0.0	0.0	100.0 ( 2)	
지역규모								
대도시	34.4	18.6	13.5	2.8	16.7	14.0	100.0 (215)	12.6(10)
중소도시	35.2	18.1	13.2	3.5	13.2	16.7	100.0 (227)	
농어촌	41.2	24.4	15.1	3.4	5.9	10.1	100.0 (119)	
정원규모								
20인 이하	37.7	16.6	10.8	2.2	12.6	20.2	100.0 (223)	16.0(10)
21인 이상~49인 이하	34.3	21.2	15.7	4.0	12.6	12.1	100.0 (198)	
50인 이상	36.4	22.1	15.7	3.6	14.3	7.9	100.0 (140)	
개원년도								
2011년 이후	39.0	16.3	12.8	0.0	10.6	21.3	100.0 (141)	23.1(15)
2006 ~ 2010년	32.6	21.2	13.6	3.8	13.6	15.2	100.0 (132)	
2001 ~ 2005년	35.7	15.5	17.1	4.7	17.1	10.1	100.0 (129)	
2000년 이전	37.1	24.5	11.9	4.4	11.3	10.7	100.0 (159)	

\*  $p < .05$  \*\*  $p < .01$ 

## 2) 설치 불가 이유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려 하지 않는 시설 80개소를 대상으로 설치불가 이유에 대해 질문했을 때, 42.5%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으로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설치비용 부족이 31.3%로 조사되었다. 가정어린이집을 제외하면 민간어린이집에서 설치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많은 가운데 설치 필요성이 없다는 인식과 설치비용 부담이 대부분의 이유로 꼽히고 있고, 기타의 이유로는 인근주민이 반대한다거나 관리비용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있었다.

〈표 III-3-6〉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으려는 이유

단위: %, (명)

구분	필요 하지 없음	설치비용 부족	폐원 예정	설치 공간 없음	이전· 재건축 예정	기타	계	(수)	$\chi^2(df)$
전체	42.5	31.3	6.3	5.0	5.0	10.0	100.0	(80)	
인건비정부지원 여부									
인건비지원시설	43.1	30.6	6.9	5.6	5.6	8.4	100.0	(72)	20.3(8)**
인건비지원시설	37.5	37.5	0.0	0.0	0.0	25.0	100.0	( 8)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33.3	33.3	0.0	0.0	0.0	33.3	100.0	( 3)	32.7(32)
민간	38.5	34.6	0.0	3.8	7.7	15.3	100.0	(26)	
사회복지법인	40.0	40.0	0.0	0.0	0.0	20.0	100.0	( 5)	
가정	46.7	26.7	11.1	6.7	4.4	4.4	100.0	(45)	
법인단체	0.0	100.0	0.0	0.0	0.0	0.0	100.0	( 1)	
지역규모									
대도시	36.7	36.7	6.7	0.0	3.3	16.6	100.0	(30)	13.8(16)
중소도시	44.7	26.3	5.3	10.5	7.9	5.2	100.0	(38)	
농어촌	50.0	33.3	8.3	0.0	0.0	8.3	100.0	(12)	
정원규모									
20인 이하	46.7	26.7	11.1	6.7	4.4	4.4	100.0	(45)	15.7(16)
21인 이상~49인 이하	37.5	33.3	0.0	4.2	4.2	20.9	100.0	(24)	
50인 이상	36.4	45.5	0.0	0.0	9.1	9.1	100.0	(11)	
개원년도									
2011년 이후	33.3	36.7	10.0	3.3	6.7	9.9	100.0	(30)	22.3(24)
2006 ~ 2010년	45.0	20.0	10.0	5.0	10.0	10	100.0	(20)	
2001 ~ 2005년	46.2	23.1	0.0	7.7	0.0	23.1	100.0	(13)	
2000년 이전	52.9	41.2	0.0	5.9	0.0	0.0	100.0	(17)	

\*\*  $p < .01$

## 다. 실외 놀이터 설치 가능성

### 1) 설치 가능 공간

현재 실외놀이터를 이용하고 있지 않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외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았더니 전체의 73.5%가 공간이 없다는 응답을 하였다. 어린이집 유형중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50%가 설치 공간이 있다고 응답하여 비교적 높았으나 나머지 유형에서는 실외놀이터 설치 가능 공간이 없다는 응답이 현저히 높았다. 특히 2006년 이후에 개원한 어린이집의 경우 실외놀이터 설치 공간이 없다는 응답이 높아 실외놀이터 설치 가능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표 III-3-7〉 실외놀이터 설치 가능 공간 유무

단위: %, (명)

구분	있음	없음	계	(수)	$\chi^2(df)$
전체	26.5	73.5	100.0	(362)	
인건비정부지원 여부					
인건비미지원시설	28.0	72.0	100.0	(293)	1.7(1)
인건비지원시설	20.3	79.7	100.0	( 69)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18.8	81.3	100.0	( 64)	6.9(5)
민간	28.6	71.4	100.0	(255)	
사회복지법인	40.0	60.0	100.0	( 5)	
법인단체	50.0	50.0	100.0	( 8)	
직장	17.2	82.8	100.0	( 29)	
부모협동	0.0	100.0	100.0	( 1)	
지역규모					
대도시	28.0	72.0	100.0	(161)	0.5(2)
중소도시	24.7	75.3	100.0	(158)	
농어촌	27.9	72.1	100.0	( 43)	
개원년도					
2011년 이후	22.7	77.3	100.0	(119)	8.2(3)*
2006 ~ 2010년	19.8	80.2	100.0	( 96)	
2001 ~ 2005년	30.6	69.4	100.0	( 72)	
2000년 이전	37.3	62.7	100.0	( 75)	

\*  $p < .05$ 

실외놀이터를 설치할 공간이 있다고 응답한 21인 이상 49인 이하 시설을 대상으로 설치 가능 공간의 위치를 질문하였다. 실외놀이터 설치 가능 공간으로는 마당이 52.1%, 옥상이 42.7%로 10% 정도의 차이를 보였고 기타 실외 공간은 5.2%로 조사되었다.

〈표 III-3-8〉 실외놀이터 설치 가능 공간

단위: %, (명)

구분	마당	옥상	기타 실외 공간	계	(수)	$\chi^2(df)$
전체	52.1	42.7	5.2	100.0	(96)	
인건비정부지원 여부						
인건비미지원시설	54.9	41.5	3.7	100.0	(82)	7.3(3)
인건비지원시설	35.7	50.0	14.2	100.0	(14)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33.3	50.0	16.6	100.0	(12)	13.1(12)
민간	54.8	42.5	2.7	100.0	(73)	
사회복지법인	50.0	50.0	0.0	100.0	( 2)	
법인단체	75.0	25.0	0.0	100.0	( 4)	
직장	40.0	40.0	20.0	100.0	( 5)	

구분	마당	옥상	기타 실외 공간	계	(수)	$\chi^2(df)$
지역규모						
대도시	51.1	46.7	2.2	100.0	(45)	4.0(6)
중소도시	51.3	38.5	10.3	100.0	(39)	
농어촌	58.3	41.7	0.0	100.0	(12)	
개원년도						
2011년 이후	55.6	40.7	3.7	100.0	(27)	5.3(9)
2006 ~ 2010년	63.2	31.6	5.3	100.0	(19)	
2001 ~ 2005년	54.5	40.9	4.5	100.0	(22)	
2000년 이전	39.3	53.6	7.2	100.0	(28)	

## 2) 예상 비용

실외놀이터를 설치할 공간이 있다고 응답한 21인 이상 49인 이하 시설에서는 향후 실외놀이터를 설치하고자 할 때 평균 5,563만원 정도를 예상 비용으로 보고 있어 실제 설치비용으로 조사된 1,721.4만원보다 3배 가까이 높은 비용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공립과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어린이집에서 실외놀이터 설치비용을 6,000만원 이상 높게 예상하고 있었다.

〈표 III-3-9〉 실외놀이터 설치 시 예상 소요 비용

단위: %, (명)

구분	1000 만원 미만	1000 만원 ~ 2000 만원 미만	2000 만원 ~ 5000 만원 미만	5000 만원 ~ 1억 미만	1억 이상	모름/ 무응 답	계	(수)	평균 (만원)	$\chi^2(df)$
전체	11.9	19.1	24.6	9.4	15.5	19.6	100.0	(362)	5562.9	
인건비정부지원 여부										
인건비미지원시설	12.3	21.8	23.9	8.5	14.0	19.5	100.0	(293)	5207.6	10.2(5)
인건비지원시설	10.1	7.2	27.5	13.0	21.7	20.3	100.0	(69)	7087.3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10.9	7.8	26.6	14.1	20.3	20.3	100.0	(64)	7152.9	46(25)**
민간	12.9	22.7	24.3	6.3	12.2	21.6	100.0	(255)	5100.0	
사회복지법인	0.0	0.0	40.0	0.0	40.0	20.0	100.0	(5)	6250.0	
법인단체	0.0	12.5	25.0	12.5	37.5	12.5	100.0	(8)	6642.9	
직장	6.9	17.2	20.7	27.6	24.1	3.4	100.0	(29)	5785.7	
부모협동	100.0	0.0	0.0	0.0	0.0	0.0	100.0	(1)	500.0	
지역규모										
대도시	11.2	16.1	23.6	8.7	20.5	19.9	100.0	(161)	5694.6	7.8(10)
중소도시	12.7	21.5	26.6	10.1	10.1	19.0	100.0	(158)	5849.2	
농어촌	11.6	20.9	20.9	9.3	16.3	20.9	100.0	(43)	3985.3	

구분	1000 만원 미만	1000 만원 ~ 2000 만원 미만	2000 만원 ~ 5000 만원 미만	5000 만원 ~ 1억 미만	1억 이상	모름/ 무응 답	계	(수)	평균 (만원)	$\chi^2(df)$
개원년도										
2011년 이후	16.0	19.3	20.2	10.9	12.6	21.0	100.0	(119)	5334.0	13.1(15)
2006 ~ 2010년	6.3	16.7	27.1	11.5	17.7	20.8	100.0	( 96)	5786.2	
2001 ~ 2005년	13.9	19.4	31.9	4.2	13.9	16.7	100.0	( 72)	4787.5	
2000년 이전	10.7	21.3	21.3	9.3	18.7	18.7	100.0	( 75)	6400.0	

### 3) 설치 완료 예상 시기

실외놀이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설치를 완료할 수 있는 시기를 언제로 보는가라는 질문에서, 69.9%의 많은 수가 설치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어린이집 유형 중 국공립어린이집에서는 78.1%가 설치하지 않겠다고 응답을 보였다. 비교적 가까운 장래인 2017년 하반기 이전에 실외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4.3%정도였고 직장어린이집에서의 응답율이 높았다.

〈표 III-3-10〉 실외놀이터 설치 의무화 시 예상 설치 완료 시기

단위: %, (명)

구분	2016년 연내	2017년 상반기	2017년 하반기	2018년 상반기	2018년 하반기	설치하지 않겠음	계	(수)	$\chi^2(df)$
전체	3.0	3.6	7.7	2.8	13.0	69.9	100.0	(362)	
인건비정부지원 여부									
인건비미지원시설	3.1	3.8	8.5	3.4	12.6	68.6	100.0	(293)	4.3(5)
인건비지원시설	2.9	2.9	4.3	0.0	14.5	75.4	100.0	( 69)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3.1	1.6	4.7	0.0	12.5	78.1	100.0	( 64)	58.5(25) ***
민간	2.7	3.1	9.0	3.1	12.2	69.8	100.0	(255)	
사회복지법인	0.0	20.0	0.0	0.0	40.0	40.0	100.0	( 5)	
법인단체	0.0	0.0	12.5	0.0	0.0	87.5	100.0	( 8)	
직장	6.9	10.3	3.4	3.4	20.7	55.2	100.0	( 29)	
부모협동	0.0	0.0	0.0	100.0	0.0	0.0	100.0	( 1)	
지역규모									
대도시	3.1	5.0	6.2	2.5	14.3	68.9	100.0	(161)	7.9(10)
중소도시	3.2	2.5	10.1	3.2	9.5	71.5	100.0	(158)	
농어촌	2.3	2.3	4.7	2.3	20.9	67.4	100.0	( 43)	

구분	2016년 연내	2017년 상반기	2017년 하반기	2018년 상반기	2018년 하반기	설치하지 않겠음	계	(수)	$\chi^2(df)$
개원년도									
2011년 이후	3.4	3.4	7.6	0.8	10.9	73.9	100.0	(119)	17.7(15)
2006 ~ 2010년	2.1	5.2	4.2	2.1	11.5	75.0	100.0	( 96)	
2001 ~ 2005년	4.2	2.8	5.6	6.9	16.7	63.9	100.0	( 72)	
2000년 이전	2.7	2.7	14.7	2.7	14.7	62.7	100.0	( 75)	

\*\*\*  $p < .001$

#### 4) 설치 불가 이유

실외놀이터를 설치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설치 불가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54.5%가 설치 공간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고 28.9%는 설치비용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어린이집 유형별로 살펴보면 직장이 75.0%로 설치 공간이 없다는 응답이 높았고 지역규모에서는 대도시에서 설치 공간 부족을 이유로 든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표 III-3-11〉 실외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으려는 이유

구분	설치 공간 없음	설치비용 부족	필요성 없음	기타	계	(수)	$\chi^2(df)$
전체	54.5	28.9	13.4	3.2	100.0	(253)	
인건비정부지원 여부							
인건비미지원시설	55.2	29.4	12.4	3.0	100.0	(201)	1.0(3)
인건비지원시설	51.9	26.9	17.3	3.8	100.0	( 52)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54.0	26.0	16.0	4.0	100.0	( 50)	10.6(12)
민간	53.4	30.9	12.9	2.8	100.0	(178)	
사회복지법인	0.0	50.0	50.0	0.0	100.0	( 2)	
법인단체 직장	57.1 75.0	42.9 6.3	0.0 12.5	0.0 6.3	100.0 100.0	( 7) ( 16)	
지역규모							
대도시	60.4	28.8	9.0	1.8	100.0	(111)	11.0(6)
중소도시	52.2	28.3	14.2	5.3	100.0	(113)	
농어촌	41.4	31.0	27.6	0.0	100.0	( 29)	
개원년도							
2011년 이후	54.5	27.3	14.8	3.4	100.0	( 88)	12.3(9)
2006 ~ 2010년	58.3	18.1	18.1	5.6	100.0	( 72)	
2001 ~ 2005년	50.0	39.1	8.7	2.2	100.0	( 46)	
2000년 이전	53.2	38.3	8.5	0.0	100.0	( 47)	

단위: %, (명)

## IV. 시설기준 개선을 위한 제언

시설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가 제안하는 교사실, 단독경보형감지기, 실외놀이터의 설치를 위한 면적 기준, 예상 소요 비용, 규정 시행을 위한 유예 기간 등을 본 장에 담았다. 더불어 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자 할 때 고려하고 검토될 필요가 있는 사항을 함께 논의하였다.

### 1. 설치 공간

#### 가. 교사실

본 연구에서 실태 조사를 통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전체 응답 어린이집 중 10%정도가 교사실을 마련할 공간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규모별로 보면 20인 이하 시설을 제외하면 설치 공간 비율을 가진 곳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이고 50인 이상 시설은 20%가 교사실을 둘 공간이 있다고 응답하여 가능성이 비교적 커 보인다. 그러나 의무화되더라도 교사실을 설치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34%로 나타나고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간이 부족하더라도 설치해야 할 상황이면 66%는 교사실을 두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는 점에 주의를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50인 이상 어린이집에서는 이미 78.7%가 교사실을 두고 있고 현재 교사실이 없는 곳 중 81%가 설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므로 규모가 큰 시설부터 설치를 유도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본 보고서 2장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자료 분석을 보면, 어린이집당 평균 7.5개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50인 이상 시설에서는 평균 10.3개의 반이 있어 최소한 10명 이상의 교사가 근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들을 위한 사무 및 휴식 공간인 교사실은 필요해 보이고 설치 가능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20인 이하 시설에서는 현재 설치된 곳이 28%에 지나지 않고 미설치 시설 중 38%가 설치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므로 20인 이하 시설에 교사실을 두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20인 이하 시설의 평균 반수는 6.4개로 6~7명의 교사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들을 위한 공간이 꼭 필요할 것은 분명하나 50인 이상의 시설보다는 설치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사료된다.

21인 이상 49인 이하 시설 중 52%가 교사실을 설치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20인 이하 시설보다는 설치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향후 설치 가능성에 대한 응답에서는 20인 이하 시설과 비슷한 비율로 부정적인 경향을 보여 빠른 시일 안에 설치를 완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이 규모의 어린이집은 교사실을 설치하더라도 원장실이나 다른 실의 일부 공간에 두고 있는 경우가 64%에 이르므로 49인 이하 어린이집의 경우는 단독실을 두도록 하기 보다는 공간 일부를 개조하여 7명 정도의 교사가 교대로 교사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어린이집 교사실의 적정 면적 기준을 산출하기 위해서 실태 조사에서 나타난 평균 면적을 기준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어린이집당 평균 근무 교사 수는 7.5명 정도로 나타나고(본 보고서 <표 II-2-6> 참조) 설치된 시설의 평균 교사실 면적은 19.5㎡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이를 교사 1인당 평균 면적으로 계산해 보면 2.6㎡가 된다. 참고로 김은영 등(2009)은 사례조사에서 어린이집 교사실 면적은 교사 1인당 1.2~3.9㎡라고 보고하였고 반면 유치원 교사실은 2.5~10.6㎡/명이라고 하였다. 또한 영국 교육부가 제공하는 유아원(nursery school) 설계 지침에서는 직원실을 최소 15㎡로 제시하고 있다(김은설 외, 2014: 50). 이들 선행 연구에 따라 김은설 등(2014)은 유치원 교사실(교무실)의 최소 면적 기준을 15㎡로 두도록 제안하고 '교사 수×5.54㎡'를 권장 수준으로 추가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태 조사 결과와 선행연구의 기준 제안을 바탕으로, 어린이집 교사실의 기준 넓이를 교사 1인당 2.6㎡ 수준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 나. 단독경보형감지기

조사 결과 화재대비시설로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고 있는 비율을 살펴보면 71.2%가 설치를 하고 있고 설치하지 않은 시설에서도 근년 내로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 비율이 85%를 넘어,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큰 어려움 없이 수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 이 기기는 설치를 위해 큰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공간에 대한 필수 요건이 요구되지도 않는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연결을 위한 추가적인 전기 설비가 필요한 기구가 아니며 필요한 위치에 쉽게 탈부착이 가능한 단독형 화재감지기이다. 설치 시에는 구획

된 각 실별로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천장 설치 시에는 벽이나 보에서 60 cm 이상 떨어진 중앙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에어컨 송풍구나 환기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져 있도록 위치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천정이나 벽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에는 공간적 제약이 따르지 않는다고 보겠다.

#### 다. 실외놀이터

21인 이상 49인 이하 시설에 대해 실외놀이터를 갖추고 있는지 알아본 결과 21.5%가 가지고 있다고 하였고 17.5%는 실외놀이터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나머지 61%는 인근 놀이터를 이용하고 있었다. 현재 어린이집에 개별 소유의 실외놀이터가 없는 경우 26.5%만이 마당이나 옥상 등에 설치할 공간이 있다고 응답하여 실제로 신규로 놀이터 설치가 가능한 경우가 많지 않음을 짐작하게 한다.

본 연구의 2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자료 분석을 보면, 21인 이상 49인 이하 시설 실외놀이터의 평균 면적은 181.6㎡이다. 그러나 이는 기존에 설치할 공간을 갖고 충분한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설치를 한 일부 시설의 평균이다. 즉, 산출된 수치는 전체 21인 이상 49인 이하 시설 9,679개소 중 운영 현황이 양호한 13.2%인 1,278개소의 놀이터 면적 통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보육사업안내」에서 제시하고 있는 놀이터 면적 기준은 50인 이상 99인 이하 시설의 경우 “정원×45%×3.5㎡” 산식을 이용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식을 적용하여 정원이 21인 이상 49인 기준으로 산출해보면 실외놀이터 면적은 33.1㎡~77.2㎡가 된다. 미국의 경우 10명 이하의 영유아가 동시에 이용하게 될 경우 놀이터 면적은 32.5㎡로 동일 기준이 확정되어 있고 11명 이후부터는 “32.5+3.25×정원”의 산식으로 면적을 산출하고 있다(김은설 외, 2014: 93). 즉, 최소 면적을 32.5㎡로 두고 있어 21인 어린이집의 기준 33.1㎡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21인 정원 어린이집의 경우 1, 2세반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음을 감안<sup>3)</sup>하면 1세 2개반 동시 이용의 경우 10명 정도이므로 미국의 최소 면적 산출 방식과 유사한 기준을 보인다. 결과적으로 정원에 대비하여 산출한 현행 공식의 활용이 적정하다고 보겠다.

3) 본 보고서 <표 II-2-6>에 의하면 21인 이상 49인 이하 어린이집의 평균 반수는 6.96개이고 1, 2세 반이 2개씩, 0세 반인 1~2개로 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아는 1개 또는 혼합반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및 해외 사례를 토대로 도출한 21인 이상 49인 이하 실외놀이터의 면적 기준은 다음의 <표 IV-1-1>과 같다.

<표 IV-1-1> 21인 이상 49인 이하 시설 실외놀이터 면적 기준 안

시설 규모	면적 기준
21인 이상 49인 이하	정원 × 45% × 3.5m <sup>2</sup> (33.1m <sup>2</sup> ~77.2m <sup>2</sup> )

## 2. 비용

### 가. 교사실

교사실의 설치비용은 확일적으로 제시하기가 어렵다. 면적 기준을 교사 일인당 2.6m<sup>2</sup>로 할 경우에도 기존의 보육실 여유분이 있다면 이를 이용할 수 있고 새로이 공사를 해서 공간을 마련해야 할 경우는 공사 상황에 따라 다른 비용이 들 것이므로 한 가지 비용으로 제시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각 시설이 예상하는 교사실 설치비용을 조사함으로써 개별 시설이 처한 상황을 고려한 비용을 짐작해 보고자 하였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원장들이 교사실 설치에 따른 소요 비용으로 예상하고 있는 평균 금액은 1,086만원 정도이고 규모가 클수록 더 큰 비용을 예상하여 50인 이상일 때 5,000만원 이상이 들 것으로 보는 비율도 꽤 있었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통계에 따르면 한 어린이집 당 평균 7.5개의 반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교사 또한 7.5명 정도가 한 시설에 근무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본 보고서 <표 II-2-6> 참조). 이들에 필요한 교사실의 넓이를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인당 2.6m<sup>2</sup>로 보면, 어린이집별로 평균 약 20m<sup>2</sup> 정도의 교사실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평균 소요액으로 예상된 비용 1,086만원으로 연결해보면, m<sup>2</sup>당 평균 54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 나. 단독경보형감지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가격은 인터넷 온라인 판매를 검색해본 결과 대당 10,000원 내외부터 30,000원 정도까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어린이집의 규모에 따라

다르겠으나 최소 규모인 가정어린이집을 예상해보면 보육통합시스템 자료 분석 결과에서 가정어린이집은 6개 정도 반을 운영하고 0, 1, 2세를 각각 합반하여 한 공간에서 보육한다고 보면 최소 3개 정도의 실(공간)로 이루어져 있다고 추측이 가능하다. 한편 본 보고서 <표 II-2-6>에서 가장 반 수가 많은 50명 이상 어린이집의 평균 반 수인 10개 반을 기준으로 반뿐만 아니라 급식조리실, 원장실, 교사실, 복도, 계단, 유희실 등 여러 공간 구획마다 설치를 해야 할 것을 고려하면 20개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추가적인 설치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기구이므로, 감지기 자체의 구입가만 비용에 산정하면 된다. 그러므로 신규 설치 시 기관 규모에 따라 최소 30,000원부터 최대 200,000원 이상까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 다. 실외놀이터

실외놀이터 예상 설치비용은 두 가지 방식으로 추정해보았다. 첫째는 기존에 실외놀이터를 설치한 적이 있는 21인 이상 49인 이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설치에 소요된 비용을 질문하여 가격을 알아본 것이다. 117개 어린이집이 응답했으며 이들의 평균 소요 비용은 1,721만원이었다. 설립 유형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비용을 가장 높게 보고하고 있지만 해당 규모에 속하는 어린이집들만의 응답 평균이므로 비용 규모가 1,700만원 내외일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그러나 이는 21인 이상 49인 이하 시설 놀이터 평균 면적이 181㎡(보육통합정보시스템 자료의 의함)로 조사된 것임을 감안하여야 한다.

현재 실외놀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어린이집에게 예상 설치비용을 제시해 보라는 질문에서 대부분 5,000만원 이상을 예상하였고 평균 5,563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었다. 이는 실외놀이터 설치에 따른 부지 마련 비용부터 포함된 것으로 생각하고 설치비용을 예상한 경우일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금액만을 비교하면 실제 설치비용과 차액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나 미설치 어린이집이 실외놀이터 설치에 대해 매우 큰 부담감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의 방법은 어린이집 실외놀이터 전문 시공 업체와의 면담을 통해 기준으로 삼은 면적의 놀이터를 설치하고자 할 때 소요되는 비용 견적을 받음으로써 설치비용을 예상해보고자 한 것이다. 연구진이 선택한 사설 전문 시공 업체는 서울시 ○○구청 보육정책과에 문의하여 구립어린이집 실외놀이터 설치를 담당할 업체 중 추천을 받아 선정된 곳이다. 시공 업체에서는 바닥재나 놀이 시

설 등에 따라 비용이 매우 큰 편차를 보일 수 있다고 하여 저가와 고가 등 2가지 경우의 비용 견적을 제시하여 이를 모두 검토하였다. 전문 시공 업체가 제시한 비용을 살펴보면 33.1㎡일 경우 최소 600만원, 77.2㎡일 경우는 최소 900만원부터 1,370만원까지로 산출되었다(부록3 참조). 최소 비용은 최저가의 놀이기구 3개를 주어진 면적 공간에 설치하고 바닥 재료를 깐 경우가 되고 최대 비용은 최고가의 놀이기구와 비용이 높은 바닥재를 사용한 경우로 산출한 결과이다.

### 3. 설치 의무 유예 기간

교사실, 단독경보형감지기, 실외놀이터 설치를 의무화할 때 어느 정도의 유예 기간이 필요한지를 본 연구의 실태 조사 자료에 근거하여 검토하였다.

#### 가. 교사실

어린이집 원장 대상 설문 조사에서 해당 설비를 언제까지 완료할 수 있는냐를 질문한 결과 교사실의 경우 설치하겠다고 응답한 66.1% 중 과반이 넘는 38.9%가 제안된 의무 실시 시작 시기(2016년 하반기)와 1년 후(2017년 하반기)까지 완료할 수 있다는 응답을 하였다. 즉 설치 의사가 있는 응답자의 59%가량이 1년 간의 유예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조사 결과상 전체 100% 설치하는 2년이 지난 2018년 하반기경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응답 경향을 고려하여 최소 1년 이상 2년 이내의 의무 설치 유예 기간이 필요해 보인다.

#### 나. 단독경보형감지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와 관련해서는 설치 의사가 있는 어린이집의 64.4%가 올해 설치 의무화가 시행된다면 내년(2017년) 상반기까지 설치할 수 있다는 응답을 보였고 총 81.1%는 내년 하반기까지 설치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이에 근거하여볼 때 최소 6개월간의 설치 유도 기간이 필요하고 모든 시설의 설치 완료를 목표로 할 경우 1년 간의 유예 기간을 준다면 충분해 보인다.

## 다. 실외놀이터

실외놀이터 설치에 대해서는 많은 수가 설치하지 않겠다라는 응답(46.3%)을 보인 가운데 제시된 설치 가능 시기에 대해 55%가 설치 의무화 시행 2년 후로 가정된 2018년 하반기 이후를 선택하여 최대한 긴 기간을 설치 완료 시기로 잡고 있었다. 즉, 그만큼 실외놀이터 설치가 쉽지 않은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만일 실외놀이터 설치를 의무화하게 되면 유예기간으로 최소 2년은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4. 예상 설치 대상 어린이집 수

설치 기준 개선을 고려하고 있는 교사실, 단독경보형감지기, 실외놀이터를 향후 실제 설치하게 될 어린이집의 수를 예상해 보면 이러한 개선 과정에서 소외되는 전체 비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실태 조사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자료, 2015년 전국보육실태 조사 결과 자료 등을 함께 활용하여 예상 설치 시설 수를 산출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사실의 경우 전체 41,666개소 중 본 연구의 조사에 따르면 52.2%가 설치하고 있으므로 47.8%인 19,916개소가 설치를 추가로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만일 추가 교사실 설치가 공간 면에서 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은 20인 이하 시설(21,593개소)을 제외한다면 21인 이상 시설은 총 20,073개소이고 이중 66.5%(본 보고서 <표 III-2-1>에 의함)인 13,349개소가 기설치하였다고 본다면 향후 교사실이 설치되어야 할 곳은 모두 6,724개소라고 추정된다.

둘째,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우 해당 대상은 전체 어린이집이며 본 연구의 조사에서는 71.2%가 이미 이 기구를 설치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28.8%인 12,000개소만이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조사가 어린이집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개방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한 것인데 반해 전국보육실태 조사는 의도적인 표집을 진행하여 선정된 4,000개 이상 시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본 조사에 참여한 어린이집이 참여하지 않은 어린이집보다는 적극적이고 시설 개선에 관심이 큰 시설일 것으로 추측이 가능하여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비율 또한 평균보다 높게 나왔을 가능성

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보다 보수적인 수치인 전국보육실태 조사의 설치비율과 본 조사의 결과를 함께 활용하여 설치 대상 예상 수를 추정해 볼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최소 12,000개소부터 최대 25,000개소로 예상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21인 이상 49인 이하 시설에 대한 실외놀이터 설치 기준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이 규모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9,679개소 중 78.5%가 실외놀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7,598개소에 놀이터 설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공간 확보가 어려운 도서 벽지나 도심지역에 소재한 어린이집을 제외한다면 실제 수는 이보다는 적어질 것이다.

〈표 IV-4-1〉 어린이집 시설 기준 개선을 위한 제언

구분	교사실	단독경보형 감지기	실외놀이터
필요 공간	2.6㎡/교사 1인	-	정원 × 45% × 3.5㎡ (33.1㎡~77.2㎡)
소요 비용 예측	54만원/㎡	3~20만원	최저 600~900만원
유예 기간 제안	최소 1년	최소 6개월	최소 2년
설치 대상 어린이집 수(예상)	6,724개소	약 12,000개소	최대 약 7,598개소

## 5. 고려 사항

지금까지 교사실, 단독경보형감지기, 실외놀이터의 세 가지와 관련한 어린이집의 시설 기준 개정과 관련해 실태 및 의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요건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와 더불어 설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들을 검토함으로써 기준 개선 시 고려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제시되는 사항은 어린이집 원장 대상 간담회에서 논의한 의견과 연구 결과에 대한 연구진의 분석에 근거하여 정리한 것이다.

### 가. 교사실 설치와 보육 정원

어린이집 평가인증 3차 지표에 의하면 보육실 면적이 인당 2.64㎡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지금까지 어린이집 인가를 위해 요구되었던 인당 전체 연면적 규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장치로, 보육실의 크기를 규제함으로써 제도적으로

보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인가된 전체 면적과 정원을 고려하면서 보육실 면적 규정을 지키고자 한다면 다양한 실(공간)을 구성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교사실 필수 설치 요건은 어린이집 변경 인가 시 혹은 신설 시 적용할 것이 고려되고 있다. 그러나 변경 인가의 경우를 들여다보면, 교사실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실내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보육실 면적이 줄어들 수 있고 결과적으로 정원 규모가 감소되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어린이집 입장에서 동일한 건물을 사용해야 하는데 교사실 설치 요건을 시행함으로써 정원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운영상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교사실 설치의 신규 인가 시설 또는 이전하여 변경 인가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도입하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다.

#### 나. 시설 규모를 고려한 기준 적용

본 연구에서 논의되었던 세 가지 개선 항목 중 교사실 설치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의 시설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안이고, 실외놀이터 설치 기준은 현재 규정에서 이미 설치 필수가 요구되고 있는 50인 이상과 극소규모인 20인 이하를 제외한 21인 이상 49인 이하 시설에만 적용하고자 하는 개선 안이다.

이 중 교사실 설치 개선안의 경우 20인 이하 시설의 대부분이 영아반이 많은 가정어린이집이라고 볼 때, 교사가 영아를 잠시도 떠나 있기 힘들고 한편으로는 어린이집이 아동당 면적을 요구하는 보육실 규정을 지키면서 교사실을 별도로 구성하여 공간을 가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원장 포함 교사가 평균 6명 정도<sup>4)</sup> 임을 감안하여 별도 실을 두기보다 업무 시간 전후 여유가 있을 때 잠깐씩 쓸 수 있는 작은 코너만을 두는 것도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49인 이하 시설에도 많은 경우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교사실 필수 설치의 규모가 큰 곳을 중심으로 우선 적용하고, 20인 이하 시설에서는 별도의 면적 기준이나 형태의 공간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한 방안이 될 것이다.

실외놀이터의 경우 또한 부지 비용이 높아서 면적을 확대하는 것이 불가능한 도심지역에 위치한 어린이집이나 이용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도서·벽지 지역은 필수 설치 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수 있다. 그러나 도심

4) 본 보고서 2장에 제시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른 것이다. 20인 이하 시설의 평균 반수는 6.4개로 나타났다.

지역을 별도로 한다 하더라도 ‘도심’의 개념이 법적·관습적으로 분명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이를 먼저 규명해 두는 것이 선과제가 될 것이다. 또한 일반적인 지리적 도심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대도시 지역은 대지 가격이 높아 기존 어린이집이 면적을 확대하여 변경인가를 신청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즉,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과도한 부담이 지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한편, 본 연구는 실외놀이터 면적을 21인 규모의 어린이집일 때 최소 면적인 33.1㎡로 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는 외국(미국)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10명 이하의 영유아가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에 적절한 면적으로, 21인 시설이더라도 동시에 10명 이상이 이용하지는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 제시한 것이다. 즉, 이 기준은 최대 이용 인원 수 상황을 조건으로 하고 있음을 명시할 필요가 있고, 소규모 어린이집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입장에서 제시한 것으로 실제로 이 기준이 놀이터로서의 역할에 적절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현 규정에 의하면 대근육활동을 할 수 있는 놀이기구를 3개 이상 실외놀이터에 배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놀이기구가 33.1㎡의 놀이터에 설치된다면 비좁은 공간으로 인해 이용하는 영유아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 참고적으로, 유치원의 경우 40인 이하 일 때 놀이터 면적 기준은 160㎡<sup>5)</sup>이다. 또한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준에 실외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49인 이하 어린이집의 평균 놀이터 면적은 181.6㎡ 였다. 이를 감안한다면 33.1~77.2㎡의 놀이터는 실용성과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이론적 면적 수치가 될 수 있으며 이 기준으로 인해 형식적으로만 규정을 따르도록 강제하는 결과가 될 가능성도 있다.

절대 규모가 크다고 볼 수는 없는 21인 이상 49인 이하 어린이집으로 하여금 실외놀이터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대지 추가 구매에 대한 과도한 부담, 정원별 면적 산출에 따른 최소 면적 기준의 비실용성 등의 측면에서 정책입안가의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여겨진다.

---

5)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

## 참고문헌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http://www.law.go.kr/>)

교육부 공고 제 2016-172호.

김은설·최윤경·이규림·최경숙·김진미(2014). 유치원 시설·설비 적정 기준 마련 연구. 교육부.

김은영·김진경·최경숙·조운주·조혜주·안진(2009). 유치원과 보육시설 시설·설비 기준 개발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보건복지부(2016).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2016).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자료. 내부자료.

영유아보육법(<http://www.law.go.kr/>)

이미화·최윤경·이정원·도남희·권미경·박진아·이혜민·김영원(2015). 2015년 전국보육 실태 조사-어린이집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법령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 정보센터(<http://www.law.go.kr/main.html>). 법령 내용 중 다음의 법조문을 검색하여 제시함. 「건축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부 록

---

부록 1. 어린이집 설치 기준 개선을 위한 실태 조사지

부록 2. 어린이집 입지 및 건물 기준 관련 법 조항

부록 3. 실외놀이터 설치 견적서 및 도안



부록 1. 어린이집 설치 기준 개선을 위한 실태 조사지

## 어린이집 설치 기준 개선을 위한 실태 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육아정책연구소의 2016년 수시연구과제인 「어린이집 설치 기준 개선을 위한 실태 조사」의 일환으로 어린이집 내 교사실, 실외놀이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실태와 이에 관한 원장님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을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가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설문에 대한 원장님들의 답변은 어린이집 설치 기준 관련 정책 수립에 소중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빠짐없이 솔직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원장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 33조 및 제 34조에 따라 통계자료 작성 및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며, 개인정보 및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2016년 6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우 남 희

본 설문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Q1. 귀 어린이집의 정원은 몇 명입니까?

어린이집 정원 : (            ) 명

Q2. 귀 어린이집의 현재 등록 영유아는 몇 명입니까?

현재 등록 영유아 현황(명)								
연령	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 4세	만 5세	만 6세	계
수								

Q3. 교직원 수는 몇 명입니까?

원장	보육 교사	비담임 또는 보조교사	계

※ 어린이집 내 교사실 설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교사실이란 교사가 보육실 밖에서 업무를 보거나 잠깐의 휴식을 취할 수도 있는 교사용 사무 공간을 의미합니다.

문1. 귀 시설에 교사실이 있습니까?

- 1. 있음 ->문1-1
- 2. 없음 ->문2

문1-1. 교사실은 다음 중 어떤 형태입니까?

- 1. 원장실의 일부
- 2. 다른 방의 일부
- 3. 별도 교사실 공간

문1-2. 교사실 면적은 몇 m<sup>2</sup> 또는 몇 평입니까?

- 1. m<sup>2</sup> 로 응답 (     ) m<sup>2</sup> -> 문5
- 2. 평으로 응답 (     ) 평 -> 문5

문2. 귀 어린이집에는 어린이집 내에 교사실을 설치할 만한 공간이 있습니까?

- 1. 있음
- 2. 없음

문3. 만일 귀 어린이집에 교사실을 설치한다면 최소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공간 마련, 인테리어 및 사무 집기 구비 등을 모두 포함한 가격으로 예상해 주십시오.

- 1. (                    )만원



문7-2. 설치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되었습니까?

1. ( )일 -> Q4

문8. 귀 어린이집에는 마당이나 옥상 등에 실외놀이터 설치가 가능한 공간이 있습니까?

- 1. 있음 ->문8-1
- 2. 없음 -> 문9

문8-1. 그렇다면, 어디입니까?

- 1. 마당
- 2. 옥상
- 3. 기타( )

문9. 만일 귀 어린이집에 실외 놀이터를 설치한다면 필요한 비용으로 최소 얼마를 예상하십니까? 공간 마련, 놀이시설 구비 등을 모두 포함한 가격으로 예상해 주십시오.

1. ( ) 만원

문10. 만일 2016년 하반기에 실외놀이터 설치가 의무화된다면 귀 어린이집에서는 비용과 현실을 고려해볼 때 언제쯤 실외놀이터 설치를 완료할 수 있으십니까?

- 1. 올해(2016년) 12월 말 이내
- 2. 내년(2017년) 상반기 중
- 3. 내년(2017년) 하반기 중
- 4. 내후년(2018년) 상반기 중
- 5. 내후년(2018년) 하반기 이후
- 6. 설치하지 않겠음 -> 문10-1

문10-1. 그렇다면, 설치를 하지 않으시려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설치비용 부족
- 2. 설치 공간 없음
- 3. 설치 필요성 없음
- 4. 조만간 어린이집 폐원 예정
- 5. 기타( )

※ 다음은 어린이집의 일반 특성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Q4. 시설명

1. ( ) 어린이집

Q5. 개원년도

1. ( ) 년

Q6. 소재지역

- 1. 서울
- 2. 부산
- 3. 대구
- 4. 인천
- 5. 광주
- 6. 대전
- 7. 울산

8. 세종
9. 경기
10. 강원
11. 충북
12. 충남
13. 전북
14. 전남
15. 경북
16. 경남
17. 제주

Q7. 소재지 규모

1. 대도시
2. 중소도시
3. 읍면

Q8. 원장 경력

1. 3년 미만
2. 3년 이상 ~ 5년 미만
3. 5년 이상 ~ 10년 미만
4. 10년 이상

Q9. 설립유형

1. 국공립
2. 민간
3. 사회복지법인
4. 가정
5. 법인·단체
6. 직장
7. 부모협동

## 부록 2. 어린이집 입지 및 건물 기준 관련 법 조항

〈부록 표 II-1-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나타난 어린이집 설치 시 위험 시설

제9조의2(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p>① 공동주택·어린이놀이터·의료시설(약국은 제외한다)·유치원·어린이집 및 경로당(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취급소를 포함한다) 또는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된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가스저장 압력용기 내용적의 총합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 또는 충전소로부터 수평거리 2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등(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제외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p> <p>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이 확정되어 인근에 공동주택등을 건설하여도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은 제외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 해당한다) 안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만 해당한다〕</p> <p>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p> <p>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3종사업장까지의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p> <p>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제4종사업장 및 제5종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의 공장.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1982년 6월 5일 전에 법률 제 6916호 주택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건설된 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공동주택등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제5종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 중에서 해당 공동주택등의 주거환경에 위협하거나 해롭지 아니하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은 제외한다.</p> <p>라.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 다만, 공동주택등을 배치하려는 지점에서 소음·진동관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된 해당 공장의 소음도가 50데시벨 이하로서 공동주택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거나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50데시벨 이하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p> <p>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p> <p>3.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특히 위해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한다)</p>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main.html>). 인출일 2016. 7. 5.

〈부록 표 II-1-2〉 어린이집 건물 내부의 마감재료 관련 법률 내용

<p>「건축법시행령」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p>
<p>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p> <p>1.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1의2. 공동주택</p> <p>나. 화재 시 대피가 가능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출구를 갖출 것</p> <p>다. 복합자재[불연성인 재료와 불연성이 아닌 재료가 복합된 자재로서 외부의 양면(철판, 알루미늄, 콘크리트박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과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내부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할 것</p> <p>5. 5층 이상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p> <p>6.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초등학교만 해당한다)·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은 제외한다), 장례식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p> <p>7. 창고로 쓰이는 바닥면적 600제곱미터(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p> <p>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p> <p>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p> <p>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p> <p>2. 6층 이상 또는 높이 22미터 이상인 건축물</p>
<p>「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p>
<p>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동림대·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p> <p>② 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p> <p>1. 영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에 쓰이는 거실 등을 지하층 또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한 경우의 그 거실(출입문 및 문틀을 포함한다)</p> <p>2. 영 제6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거실</p> <p>③ 법 제52조제1항에서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반자·벽(경계벽 포함)·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p> <p>④ 영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 영 제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필로티 구조의 외기(外氣)에 면하는 천장 및 벽체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팅</p>

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벽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 마감재료 중 단열재는 난연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main.html>). 인출일 2016. 7. 5.

### 부록 3. 실외놀이터 설치 견적서 및 도안

1) 면적이 33.1㎡인 경우

#### <설치 견적서>

## 견 적 서 (ESTIMATE)

견 적 일: 2016년 8월 17일

수 신: 육아정책연구소

참 조: 02-398-7762

현 장 명: 서초구 육아정책연구소 A구역  
1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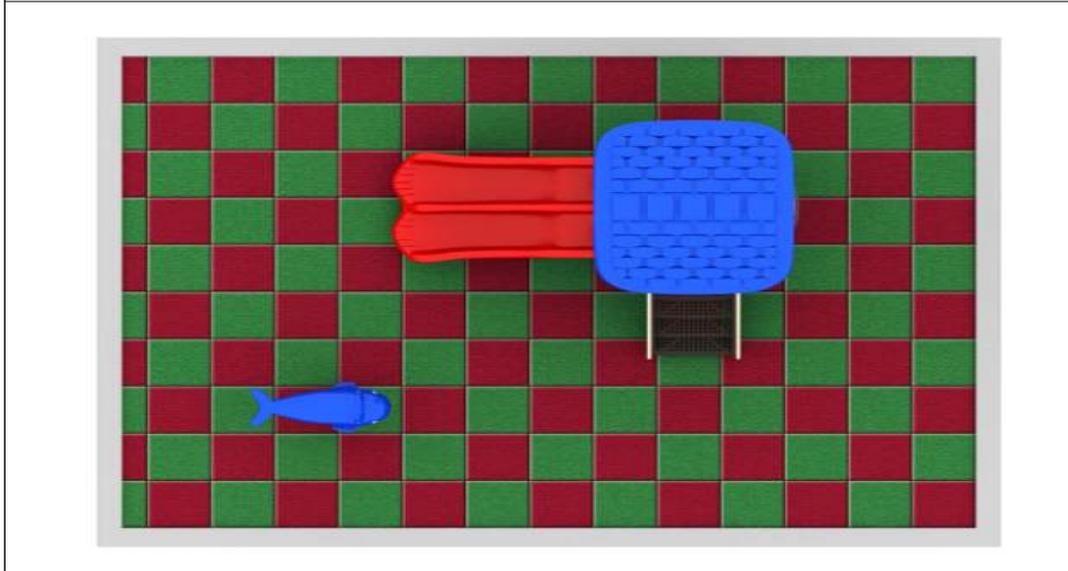
등 번 호			
상 호			
사 업 장 주 소			
업 태			

아래와 같이 견적 합니다.

(※ 견적유효기간 : 견적일로부터 9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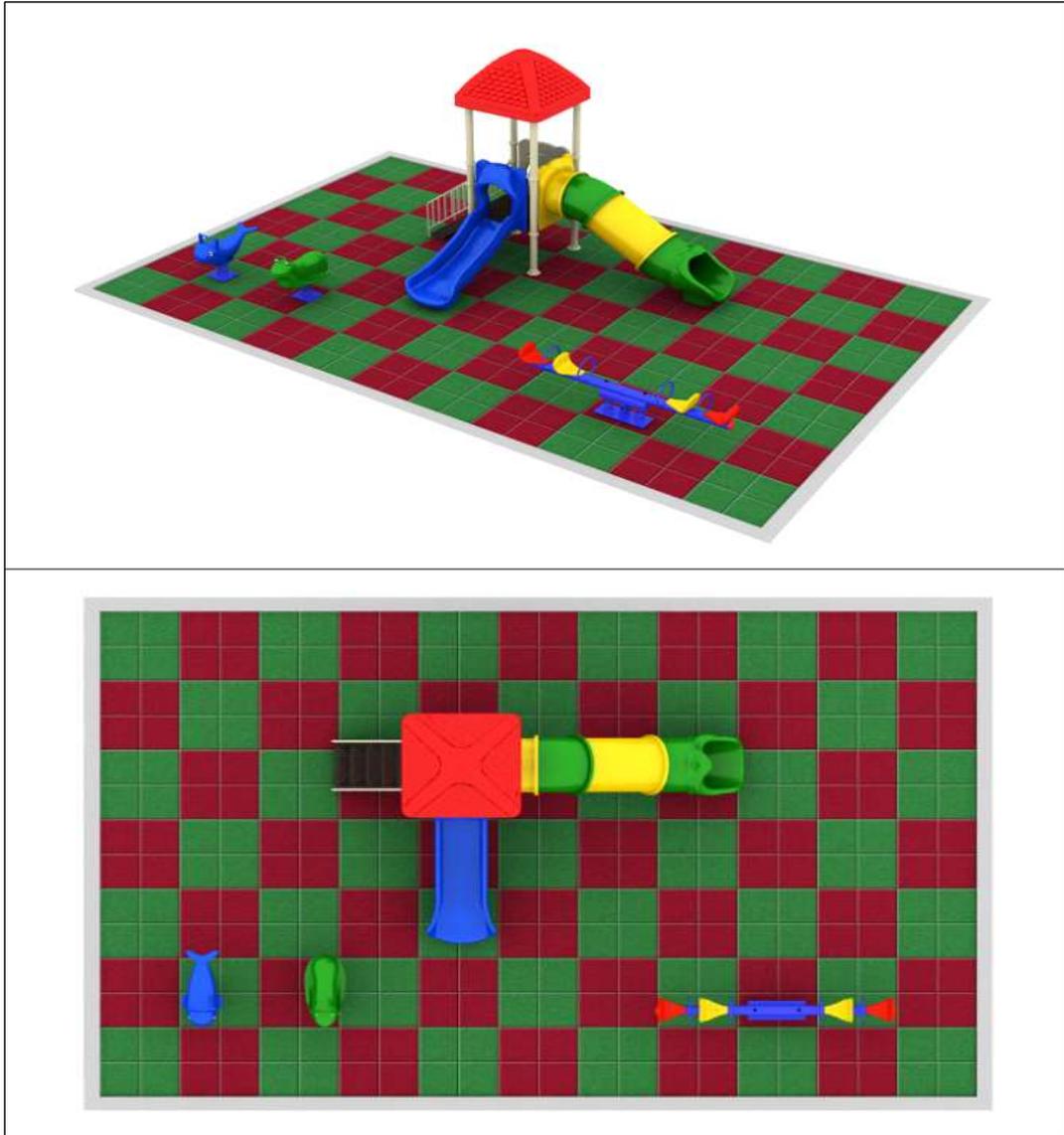
금 액	일금 일천삼백칠십만 원정					₩6,000,000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제 품 단 가	기 타	합 계	비 고
조합놀이대	3100*2500*3800	셋트	1	3,700,000		3,700,000	
흔들놀이기구	920*900*450	개	1	500,000		500,000	
고무매트	500*500*50	헤베	35	45,000		1,575,000	
안전검사비		식	1	300,000		300,000	
단위할인						-75,000	
토목공사 별도							
기존시설철거, 폐기물처리 및 장비대등의 비용발생시 별도청구							
위 견적은 실행가 견적임을 알려드립니다.							
공 급 가 액	6,000,000						
부가가치세						별도	공급가액의 10%
합계금액 (VAT포함)							
* 특기 사항							
1. VAT 별도입니다.		2. 현금결제 조건입니다.			3. 카탈로그도면기준		
입금계좌 :				예금주 :			

<설치 도안>





<설치 도안>



3) 면적이 77.2㎡인 경우(최대)

<설치 견적서>

**견 적 서 (ESTIMATE)**

견 적 일: 2016년 8월 17일	등 록 번 호		
수 신: 육아정책연구소	상 호		
참 조: 02-398-7762	사 업 장 주 소		
현 장 명: 서초구 육아정책연구소 B구역 2안	업 태		

아래와 같이 견적 합니다.

(※ 견적유효기간: 견적일로부터 90일)

금 액	일금 일천삼백칠십만 원정					₩13,700,000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제 품 단 가	기 타	합 계	비 고
조합놀이대	7400*3600*4400	셋트	1	7,400,000		7,400,000	
흔들놀이기구	920*900*450	개	2	500,000		1,000,000	
컬러칩포장	50T	헤베	78	65,000		5,070,000	
안전검사비		식	1	300,000		300,000	
단위할인						-70,000	
토목공사 별도							
기존시설철거, 폐기물처리 및 장비대등의 비용발생시 별도청구							
위 견적은 실행가 견적임을 알려드립니다.							
공 급 가 액	13,700,000						
부가가치세						별도	공급가액의 10%
합계금액 (VAT포함)							
* 특기 사항							
1. VAT 별도입니다.		2. 현금결제 조건입니다.			3. 카탈로그도면기준		
입금계좌:				예금주:			

<설치 도안>

